

GOVP1200619536

T0008609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방안

2004. 12.



농림부

www.maf.go.kr



기획예산처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보험개발원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기획예산처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2월

보험개발원

원장 김창수

■ 참여자

연구책임자 : 이득주(손해보험본부장)

연구참여자 : 유지호(화재해상보험팀장)

이준섭(화재해상보험팀 선임담당역)

이승욱(화재해상보험팀 선임담당역)

지재원(화재해상보험팀 선임담당역)

유승완(화재해상보험팀 담당역)

김형진(화재해상보험팀 담당역)

■ 용역수행기간 : 2004. 7. 16 ~ 2004. 12. 31

<목 차>

I. 추진배경 및 과제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추진방법 및 경과	1
3. 연구과제 및 내용	3
II. 국가재해보험제도 도입방안	5
1.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	5
가. 현황	5
나. 개선필요성	6
2. 국가재보험도입의 기본방향	7
3. 국가재보험 실시모델	7
가. 개선필요성	8
나. T/F 논의내용	8
다. 외국사례	8
라. 국가재보험 실시모델 (안)	13
마. 개선방안	18
4. 재원조달방법	19
가. 개선필요성	19
나. 국가재보험 재원조달방안	20
다. EML 추정을 통한 정부기금의 산출	27
라. 외국사례	29
마. 개선방안	31
III.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산출	33
1. 효율산출 원칙 및 방식	33
가. 현황 및 개선필요성	33
나. T/F 논의내용	34
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산출방법	34
라. CAT MODEL에 의한 효율산출	38
마. 보험계약자와 보험효율 산출원칙	39

2. 농작물재해보험 실적현황	40
가. 연도별 실적	40
나. 작물별 실적	41
다. 지역별 실적	42
라. 손해원인별 실적	42
마.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도 분석	43
3.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조정요인 추정	45
가. 농작물보험 경험실적	45
나. 조정요인 산출	46
다. 조정효과추정	47
라. 개선방안	47
4. 급격한 보험효율인상에 대한 정부지원	48
가. 개선필요성	48
나. T/F 논의내용	48
다. 외국사례	48
라. 개선방안	48
IV.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51
1. 현황	51
가. 손해평가 방법	51
나. 손해평가 절차	51
2. 개선필요성	53
가. 손해평가방법	53
나. 손해평가절차	53
3. T/F 논의내용	54
4. 외국의 사례	54
5. 개선방안	58
가. 단기적 방안	59
나. 중장기적 방안	60
V. 농작물재해보험의 상품 개선방안	67
1. 품목확대 방안	67

가. 현황 및 계획	67
나. 개선필요성	67
다. T/F 논의내용	67
라. 품목확대 기준 및 조건	68
마. 외국의 사례	70
바. 개선방안	71
2. 보험상품성 제고	72
가. 현황	72
나. 개선 필요성	74
다. T/F 논의내용	75
라. 외국의 사례	75
마. 개선방안	77
3. 계약인수방법 개선	77
가. 현황	77
나. 개선필요성	78
다. T/F 논의내용	78
라. 개선방안	78
4. “감귤” 보험 대상품목화 지속 여부	79
가. 현황	79
나. 감귤의 특성 및 검토결과	80
다. 향후계획	80
VI.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81
1. 정부의 순보험료 지원을 차등방안	81
가. 현황	81
나. 개선필요성	81
다. T/F 논의내용	81
라. 외국사례	82
마. 개선방안	82
2. 운영경비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83
가. 현황	83
나. 개선필요성	84

다. T/F 논의내용	84
라. 외국사례	84
마. 국내 손해보험의 사업비율	85
바. 손해사정비의 부과방식	87
사. 개선방안	87
3. 재보험 사업경비 배분	88
가. 개선필요성	88
나. T/F 논의내용	89
다. 외국사례	89
라. 개선방안	89
VII. 기타 제도개선 방안	91
1. 농작물재해보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91
가. 현황	91
나. 개선필요성	92
다. 국내외 사례	92
라. 개선방안	94
2. 손익이월에 관한 사항	99
가. 검토배경	99
나. 농협의 의견	99
다. 개선방안	100
3. 전담조직보강에 관한 사항	100
가. 개선사항	100
나. T/F 논의내용	101
다. 외국사례	101
라. 개선방안	103
VIII. 향후과제 및 추진일정(안)	105
부록	107
농작물재해보험법	107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119

< 표 차례 >

표 2-1	미국 농작물보험 재보험펀드별 위험분산 현황	9
표 2-2	미국 농작물보험 비비례적 재보험 현황(펀드 B)	9
표 2-3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15
	(농협 30%, 민영보험사 70%인수, 통상재해 300% 가정)	
표 2-4	손해율별 순소요액 추정	15
표 2-5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15
	(농협 25%, 민영보험사 75%인수, 통상재해 250% 가정)	
표 2-6	손해율별 순소요액 추정	16
표 2-7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16
	(농협 20%, 민영보험사 80%인수, 통상재해 200% 가정)	
표 2-8	손해율별 순소요액 추정	16
표 2-9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17
	(농협 25%, 민영보험사 75%인수, 통상재해 200% 가정)	
표 2-10	손해율별 순소요액 추정	17
표 2-11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가재보험료 분담비율	18
표 2-12	예산과 기금의 비교	23
표 2-13	기금신설에 관한 심사	24
표 2-14	기금의 주요사업	27
표 2-15	정부기금의 필요재원 산출	28
표 2-16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기금의 재원	29
표 2-17	미국 농작물보험 연방예산현황	30
표 2-18	일본 농업공제 예산 현황	31
표 3-1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실적	41
표 3-2	농작물재해보험 손해발생빈도	43
표 3-3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심도	44
표 3-4	농작물재해보험의 수정실적	45
표 3-5	품목별 요율조정요인	46
표 3-6	품목별 요율조정효과	47
표 3-7	보험요율 인상(가정)에 따른 정부지원을 추정	50

표 4-1	보험회사에 대한 FCIC의 제재조치	55
표 4-2	농작물재해보험에 손해액 조정제도를 신설(안)	61
표 4-3	손해평가인의 자격에 대한 고시조문안	63
표 5-1	대상작물의 기술적 선정기준	70
표 5-2	미국 농작물보험의 품목확대기준	70
표 5-3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기준	71
표 5-4	담보별 가입실태	73
표 5-5	품목별·지역별 동상해 실적	74
표 5-6	미국 농작물보험의 손해유형	76
표 5-7	미국의 농작물보험	76
표 5-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별 계약 및 손해비중(2004년 기준)	79
표 5-9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별 계약 및 손해비중(2004년 기준)	79
표 6-1	정부의 순보험료 지원을 및 농가부담을	81
표 6-2	미국 농작물보험의 순보험료 보조율 현황	82
표 6-3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83
표 6-4	미국 농작물보험 사업비율현황(2005년 기준)	85
표 6-5	손해보험의 종목별 예정율 현황	85
표 6-6	손해보험의 실적사업비 구성비 현황(2003년)	86
표 6-7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 구성항목	86
표 6-8	농작물재해보험 운영경비 내역(농협)	87

< 그림 차례 >

그림 2-1 2002년 재보험처리현황	5
그림 2-2 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10
그림 2-3 일본과수공제의 재보험현황	11
그림 2-4 일본재보험 운영체계	12
그림 2-5 스페인 농작물보험 재보험현황	12
그림 2-6 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13
그림 2-7 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19
그림 3-1 순보험료법에 의한 요율산출 flow	34
그림 3-2 손해율법에 의한 요율조정	36
그림 3-3 농작물재해보험 작물별 연도별 실적	41
그림 3-4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별 실적	42
그림 3-5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원인별 분포	43
그림 3-6 농작물재해보험 손해구간별 사고건수 분포	45
그림 3-7 배분기간(pay back)별 요율조정요인	46
그림 4-1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절차	52
그림 4-2 일본 농업재해공제 손해평가절차	57
그림 7-1 미국 RMA의 조직도	102

I. 추진배경 및 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경영 안전장치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국가재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보험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본 연구용역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운영해온 동 제도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 등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추진 방법 및 경과

- 국가재보험 도입시점에서 보험원리에 입각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아래의 기본방향에 따라 T/F운영 및 연구용역을 추진

< 기본 방향 >

- ◆ 국가재보험 도입과 병행하여 보험 작동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가재보험 모델 설계, 손해평가 객관화, 민간참여 등
 -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구체화
 - 연구용역팀과 연계하여 제도개선 방안 세부검토
- ◆ 금년 중 입법 완료 (9월이전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 T/F 구성(12명)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단장)
- 농림부 구조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산업재정2과장(공동간사)
-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 전남대학교 김석현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사회복지팀장
- 농협 농작물보험사업단장,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부장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본부장, 연구용역팀장

○ T/F 운영

- 매주 1회 T/F실무회의
- 실무회의 결과를 T/F전체회의에 상정

□ 연구추진 경과

- 4차례의 T/F전체회의, 5차례의 T/F실무회의 등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연구과제별 방안을 확정 또는 조정하였음
- T/F회의를 통하여 연구과제별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다만,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까지 지속적인 의견조정이 필요하며 정책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과제 또는 연구결과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정보자료 또는 연구의견을 최종보고에서 제시함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일지

회의	일시	장소
1차 TF 전체회의	2004. 6. 14	농림부
2차 TF 전체회의	2004. 6. 24	농림부
1차 실무회의	2004. 6. 30	보험개발원
3차 TF 전체회의	2004. 7. 8	기획예산처
2차 실무회의	2004. 7. 15	보험개발원

4차 TF 전체회의	2004. 7. 22	농림부
3차 실무회의	2004. 8. 5	보험개발원
4차 실무회의	2004. 8. 20	기획예산처
중간보고	2004. 10. 28	농림부
5차 실무회의	2004. 11. 25	LG화재

3. 연구과제 및 내용

국가재보험 실시 모델

- 국가와 보험사업자와의 책임분담 비율(국가의 인수범위, 원수보험자의 보유비율, 재보험사업비 배분 등)

국가재보험 재원조달방안

- 재보험금 지급재원조달 형식(예산, 기금 등)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 손해평가인 확보, 손해평가기법, 손해평가검증 방법
- 단위지역별 일괄감액제도의 도입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 산출(적정 효율수준 조정)

- 민간보험사의 요구와 농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효율체계 마련
- 농민부담 공제율, 할인율조정, 보험료 일부지원 등 효율인상 상쇄요인
- 국가재보험 도입이 효율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국가재보험 재정소요금액 추정

- 재보험금 지급금·적립금 등 추가 재정소요액 산정

정부의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방법 및 수준

- 순보험료 효율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검토
- 운영비 지원수준 및 방법

보험상품 운영의 개선

- 최저인수요건의 강화(현행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면적 330평이상을 상향)
- 보험조건의 강화(동상해 담보폐지, 풍속기준의 신설 등)

대상작물의 확대 및 제외에 대한 객관적 기준 검토

- 작물확대에 대한 고려사항 및 객관적 기준마련

기타 제도개선방안

- 농작물재해보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 손익이월에 관한 사항
- 전담조직 보강에 관한 사항

향후과제 및 추진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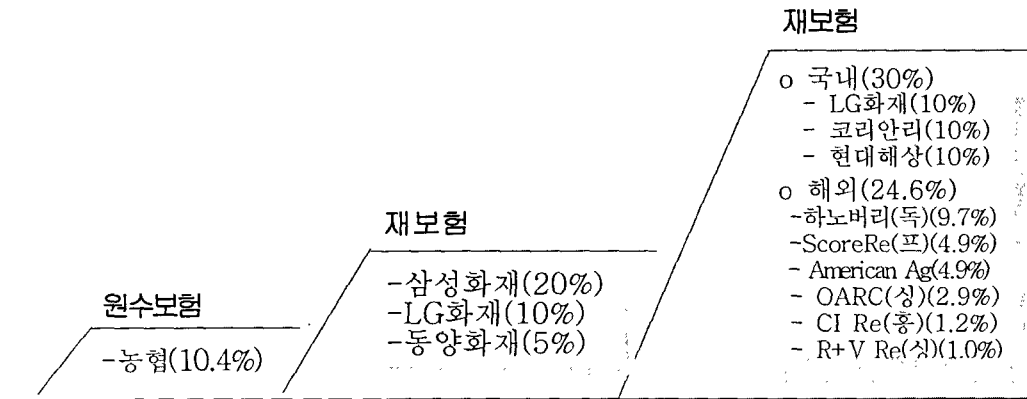
II. 국가재보험제도 도입방안

1. 농작물 재해보험의 위험분산

가. 현황

-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이후 2002년까지는 민영 보험회사 및 해외 재보험회사의 재보험 참여로 원활한 재보험처리가 이루어 졌음
 - 농협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은 국내보험사, 재재보험은 국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위험분산되었음
 - 2002년 재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34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순보험료 80억을 차감하면 268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음
- 2003년도 이후 국내민영보험사 및 해외재보험자의 재보험시장 철수로 농협이 전액보유하는 형태에 있음
 - 2003년도에 보험금 499억, 순보험료 172억원, 327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나 이중 284억원은 정부가 보전하였음

그림 2-1. 2002년 재보험처리 현황



나. 개선필요성

□ 정부에 의한 재보험시스템의 운영 필요성 대두

- 자연재해는 그 특성상 연도별 재해발생 상황이나 피해정도가 다르고 거대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거대재해에 대한 위험분산을 민영보험시장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분산체계가 붕괴될 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
- 따라서 불안정한 위험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개입에 의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영보험사 참여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정부의 보험료 보조를 통하여 운영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있어서 정책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논리에 의하여 접근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최종재보험자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는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부문의 담보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위험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가격안정에 순기능 역할을 위한 국가의 재보험 제공필요

- 국가가 잠재적으로 거대손해를 담보하는데 있어서 자금규모와 조달비용에 있어서 민영보험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
- 이것은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수준을 안정화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규모를 낮추는 순기능을 발휘함

- * 대재해발생시 민간재보험시장에서는 공급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재보험료의 급등은 연쇄적으로 농민부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외국에서도 국가가 재보험공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 국가재보험 도입의 기본방향

-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0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자연재해는 그 특성상 연도별 재해발생 상황이나 피해정도가 다르고 거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효율적인 재해보험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재해대책 보완수단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함
-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체제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사로 참여하고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입각한 보험요율의 산출, 손해평가방법의 공정성 확보,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액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위험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통상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재보험으로 인수함으로써 보험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가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
- '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재보험기금 설치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재보험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완료함
 - * 농작물재해보험 개정법률안 국회의결(2004.12.29)

3. 국가재보험 실시모델(안)

가. 개선필요성

재보험자의 원수보험자 책임강화 요구

- follow fortune을 위하여 원보험자의 보유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례담보방식의 분배는 원보험자와 민영재보험자가 공동운명체(follow the fortune)이므로 재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원보험자의 책임있는 인수비율을 요구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함

재보험자의 원수보험자 책임강화 요구

- 국가가 담당할 위험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T/F 논의내용

농협은 미국식 국가재보험(국가책임이 큰)모델을 제시하였으나 민영보험사 요구안을 T/F에서 수용하여 결정

- 농협이 원보험자로,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도에 서 통상재해액을 초과하는 거대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보험인수위험의 1차적 분담비율은 원보험자가 20%~30%를 인수하고 민영보험사는 70%~80%를 재보험으로 인수함
 - 국가는 원보험자와 민영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손해율이 200%~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보험책임을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다. 외국사례

미국

- FCIC(미국 농무성이 전액출자한 재보험운영기관)와 보험사간의 재보험협약규정(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에 의하여 펀드별로 위험분

산한도를 규정

- 민간보험사는 SRA상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FCIC에 출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o 비례적 재보험
 - 보험회사는 고위험펀드의 경우 규정한도까지만 보유하고 양호한 위험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최대한 보유하고 있음

표 2-1. 미국 농작물보험 재보험펀드별 위험분산 현황

펀드구분	Assigned Risk		Developmental		Commercial	
위험특성	고위험		중간위험		저위험	
위험분산 규정	보험사	FCIC	보험사	FCIC	보험사	FCIC
		20%이상 보유	80%미만 보유	35%이상 보유	65%미만 보유	50%이상 보유
2002년 위험분산 실적	20%	80%	82% ~ 85%	15% ~ 18%	99.1% ~ 99.5%	0.1% ~ 0.5%

o 비비례적 재보험(상품종류에 따른 펀드 B(All Other)의 경우)

- 손해를 100%초과시 부터 손해율에 따라 보험회사와 FCIC의 분담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음

표 2-2. 미국 농작물보험 비비례적 재보험 현황(펀드 B)

손해율	100%~160%		160%~220%		220%~500%		500%초과	
책임분담	보험사	FCIC	보험사	FCIC	보험사	FCIC	보험사	FCIC
		50%	50%	40%	60%	17%	83%	0%

○ 위험분담구조(농협제안모델)

그림 2-2. 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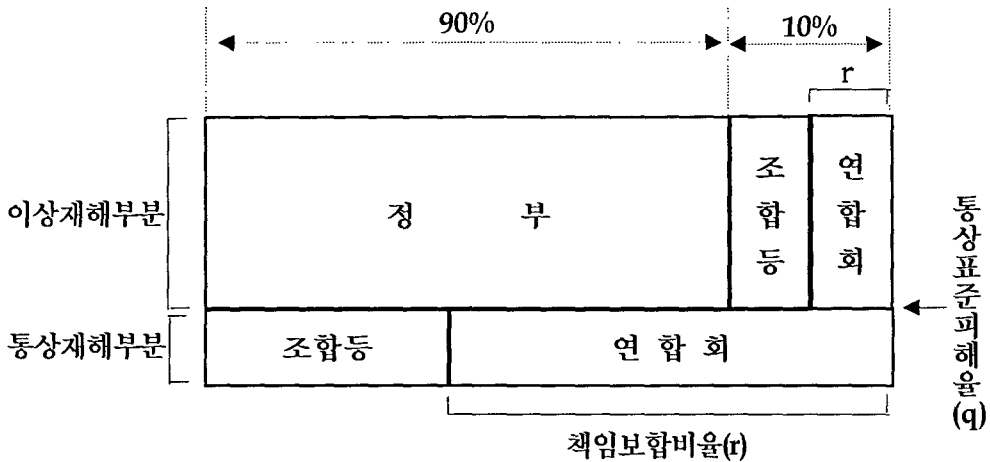
방식종류	도입기금		정착기금		발전기금		상용기금		손해 율
	국가	원보험자	국가	원보험자	국가	원보험자	국가	원보험자	
보험료 보유비율	100%	80%	20%	65%이하	35%이상	50%이하	50%이상		
			기준손익 분담액		기준손익 분담액		기준손익 분담액		
손익분담 비율	100%	100%	100%		100%		100%		500%
			98%	2%	89%	11%	83%	17%	220%
			96%	4%	80%	20%	60%	40%	160%
			95%	5%	75%	25%	50%	50%	100%
이익배분 비율	100%	100%	85%	15%	40%	60%	6%	94%	65%
			92%	9%	50%	50%	30%	70%	50%
			98%	2%	94%	6%	89%	11%	0%

주) 손익분담비율과 이익배분비율은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일본

- 조합 등별 공제금액 중 통상 표준피해율 이하의 부분(통상재해부분) 및 통상표준피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상 재해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등과 연합회가 비율에 의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기타부분은 정부가 재보험함

그림 2-3. 일본과수공제의 재보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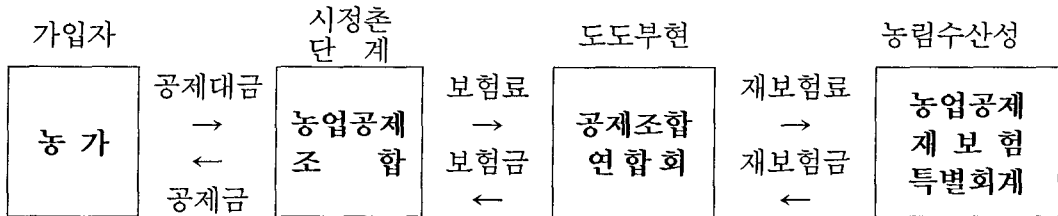
주) 1. 책임보험보험비율(r)은 조합등이 연합회에 부보하는 비율로서 조합별로 20%~80%범위내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정함.

2. 통상표준피해율(q) = $\frac{Di+16}{i-2}$ (Di: I진전년도의 피해율, i: 진전년도)

- o 일본의 농업공제는 조합, 농업공제연합회, 정부(재보험특별회계)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음
 - 공제금지급부담의 위험분산을 위해 지역단위 농업공제조합에서는 공제책임의 일부를 공제조합연합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연합회는 그 책임의 일부를 정부에 재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을 전국적으로 분산함
 - 통상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운영자인 공제조합연합회 및 공제조합이 담당하고 이상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당함
- o 단계별 재해보상체계
 - ① 농업공제조합과 시정촌에서 공제금을 지불하고 대재해발생시 공제금지급부담의 위험분산을 위해 공제책임의 일부를 연합회의 보험에 가입함
 - ② 도도부현 단위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서 공제조합의 위험을 분산함
 - ③ 농림수산성에서 연합회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정부분에 대해 재보험을 담당

- 일본의 재보험은 농림수산성에서 재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보험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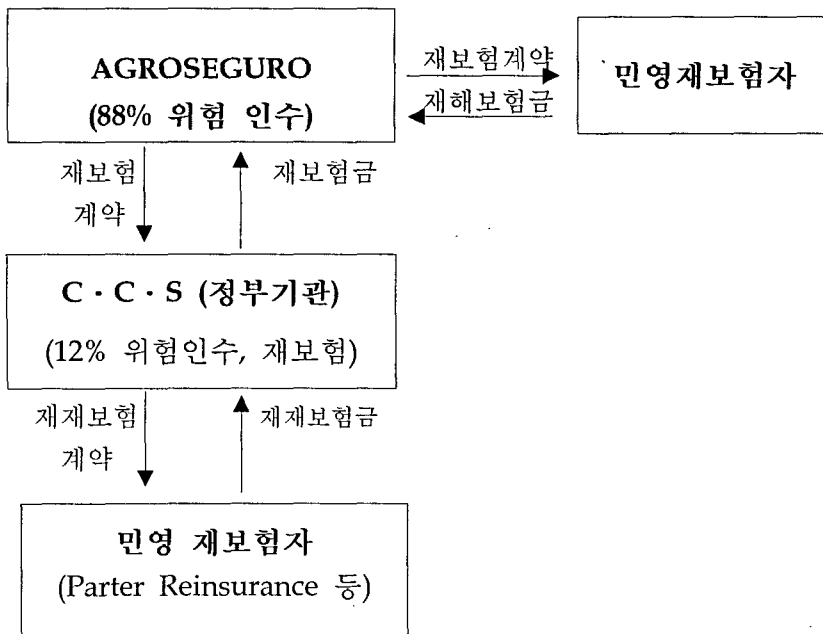
그림 2-4. 일본 재보험운영체계



□ 스페인

- 재보험비율은 보험사 풀(pool)인 Agroseguero가 88%의 위험을 인수하고 CCS가 12%를 담당하며 CCS도 Parter Reinsurance와 같은 재보험사에 재재보험을 하고 있음

그림 2-5. 스페인 농작물보험 재보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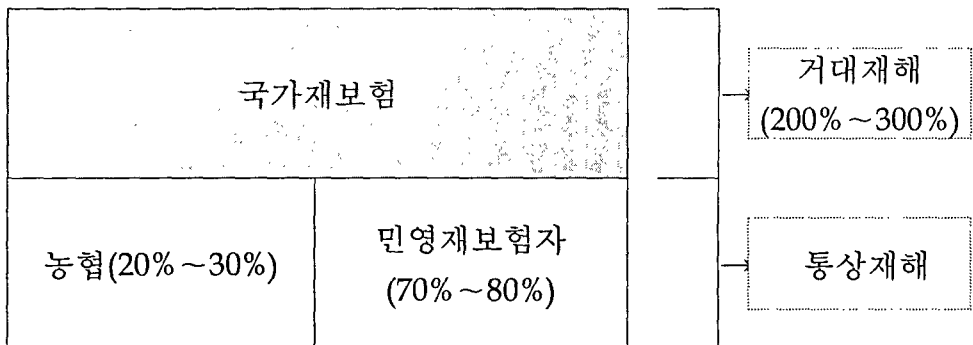


라. 국가재보험 실시모델(안)

□ 위험분담 구조

- 대재해 위험분산기법의 일반적인 재보험형태로 원보험자, 재보험자 및 국가재보험이 재보험계약에 의해 분담되는 형태임
-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소진되지 않은 책임에 한하여 분담하는 체계임

그림 2-6. 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 재보험 방법

- 원보험자와 민영재보험자는 통상재해영역의 범위내에서 민간보험시장의 담보력을 활용하여 인수비율을 결정하며 국가는 거대재해 영역에 한하여 재보험자 기능을 수행함
 - 원보험자는 비례방식(Quota Share)으로 민영재보험자에게 출재하며 통상손해율을 초과하는 책임은 비비례방식(Stop Loss)으로 국가가 부담

□ 재보험 협약 및 재보험 계약의 체결

- 민영보험사, 농협은 국가와 사업참여방법, 참여수준, 재보험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민영보험사와 농협은 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미국의 농작물보험의 재보험 계약서(SRA)

-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는 농작물보험공사(FCIC)와 보험회사가 판매한 농작물보험계약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비 등 재보험제공에 관한 제반조건을 기술함
- 동 계약은 재보험년도에 대해서 FCIC가 회사의 운영계획(Company's Plan of Operation)을 승인하고 실행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함
- 근거법안 :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Section 226A(1996)

□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

○ 기본가정

- 3개년(01~03)농작물재해보험실적을 이용하여 통상손해율 200%~300%¹⁾의 설정에 따라 전체 손해액중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의 비중을 준용하여 국가재보험료 산출
- 원보험자와 민영재보험자의 보험료 및 책임분담비율은 국가의 (재)보험료 보유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20%~30%, 70~80%의 보유비율²⁾을 적용하여 비례담보(Quota Share)방식으로 계산함

○ 세부분담비율별 분담액 추정

<제1안 : 농협30%, 민영보험사 70%인수, 통상재해 300%가정>

1) 통상손해율의 결정은 실적손해율과 예산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2) 실제 민영보험시장의 비례재보험계약에서 보유율 및 출재율은 계약 체결시마다 시장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표 2-3.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단위 : 백만원)

손해율	손해액	보험료보유			손해액분담		
		농협	민영사	국가	농협	민영사	국가
100%	32,997	9,551	22,286	1,159	9,899	23,098	-
150%	49,496	9,551	22,286	1,159	14,849	34,647	-
200%	65,994	9,551	22,286	1,159	19,798	46,196	-
300%	98,991	9,551	22,286	1,159	29,697	69,294	-
400%	131,988	9,551	22,286	1,159	29,697	69,294	32,997
500%	164,985	9,551	22,286	1,159	29,697	69,294	65,994

표 2-4. 손해율별 순소요액 추정

(단위: 백만원)

손해율	순소요액		
	농협	민영사	국가
100%	-348	-812	1,159
150%	-5,297	-12,360	1,159
200%	-10,247	-23,909	1,159
300%	-20,146	-47,007	1,159
400%	-20,146	-47,007	-31,838
500%	-20,146	-47,007	-64,835

<제2안 : 농협25%, 민영보험사 75%인수, 통상재해 250%가정>

표 2-5.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단위 : 백만원)

손해율	손해액	보험료보유			손해액분담		
		농협	민영사	국가	농협	민영사	국가
100%	32,997	6,768	20,304	5,924	8,249	24,748	-
150%	49,496	6,768	20,304	5,924	12,374	37,122	-
200%	65,994	6,768	20,304	5,924	16,499	49,496	-
250%	82,493	6,768	20,304	5,924	20,623	61,869	-
300%	98,991	6,768	20,304	5,924	20,623	61,869	16,499
400%	131,988	6,768	20,304	5,924	20,623	61,869	49,496
500%	164,985	6,768	20,304	5,924	20,623	61,869	82,493

II. 국가재보험제도 도입방안

표 2-6. 손해율별 순소요액 추정

(단위: 백만원)

손해율	순소요액		
	농협	민영사	국가
100%	-1,481	-4,443	5,924
150%	-5,606	-16,817	5,924
200%	-9,730	-29,191	5,924
250%	-13,855	-41,565	5,924
300%	-13,855	-41,565	-10,574
400%	-13,855	-41,565	-43,571
500%	-13,855	-41,565	-76,568

<제3안 : 농협20%, 민영보험사 80%인수, 통상재해 200%가정>

표 2-7.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단위 : 백만원)

손해율	손해액	보험료보유			손해액분담		
		농협	민영사	국가	농협	민영사	국가
100%	32,997	4,340	17,360	11,297	6,599	26,398	-
150%	49,495	4,340	17,360	11,297	9,899	39,596	-
200%	65,994	4,340	17,360	11,297	13,199	52,795	-
300%	98,991	4,340	17,360	11,297	13,199	52,795	32,997
400%	131,988	4,340	17,360	11,297	13,199	52,795	65,994
500%	164,985	4,340	17,360	11,297	13,199	52,795	98,991

표 2-8. 손해율별 순소요액 추정

(단위: 백만원)

손해율	순소요액		
	농협	민영사	국가
100%	-2,259	-9,038	11,297
150%	-5,559	-22,237	11,297
200%	-8,859	-35,436	11,297
300%	-8,859	-35,436	-21,700
400%	-8,859	-35,436	-54,697
500%	-8,859	-35,436	-87,694

<제4안 : 농협25%, 민영보험사 75%인수, 통상재해 200%가정>

표 2-9.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단위 : 백만원)

손해율	손해액	보험료보유			손해액분담		
		농협	민영사	국가	농협	민영사	국가
100%	32,997	5,425	16,275	11,297	8,249	24,748	-
150%	49,495	5,425	16,275	11,297	12,374	37,122	-
200%	65,994	5,425	16,275	11,297	16,499	49,496	-
300%	98,991	5,425	16,275	11,297	16,499	49,496	32,997
400%	131,988	5,425	16,275	11,297	16,499	49,496	65,994
500%	164,985	5,425	16,275	11,297	16,499	49,496	98,991

표 2-10. 손해율별 순소요액 추정

(단위: 백만원)

손해율	순소요액		
	농협	민영사	국가
100%	-2,824	-8,473	11,297
150%	-6,949	-20,847	11,297
200%	-11,074	-33,221	11,297
300%	-11,074	-33,221	-21,700
400%	-11,074	-33,221	-54,697
500%	-11,074	-33,221	-87,694

□ 보험요율 인상가정에 따른 국가재보험료 분담비율

- 2004년 실적 집계전에 추정한 국가부담 비중은 통상손해율 200% 설정 시 3개년(01~03)의 실적을 이용한 국가 재보험료 보유비율은 34.2%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2년, 2003년에 걸쳐 거대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임
- 그러나 2004년 실적을 포함하고 2005년 요율인상율을 가정하여 국가부담을 추정할 때,
 - 2004년도 현행 요율수준에서 보험요율이 50% 또는 100%인상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손해액은 없으며
 - 오히려 순보험요율 50%인상시 3.5%, 100%인상시 27.6%의 보험영

- 업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계상됨
- 상기에서 분석한 가정 시나리오에 의한 국가부담률 및 과거 4년간 실적 재계상은 참고적인 추정일 뿐으로,
 - 실제 국가재보험료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표 2-11.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가재보험료 분담비율

(단위 : 천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계
수정보험료(1)	3,967,965	12,834,119	18,061,873	29,727,551	64,591,508
수정보험료(2)	5,951,947	19,251,179	27,092,809	44,591,326	96,887,261
수정보험료(3)	7,935,930	25,668,239	36,123,745	59,455,102	129,183,015
발생손해액	566,713	38,023,944	49,093,068	5,831,475	93,515,200
수정손해율(1)	14.3%	296.3%	271.8%	19.6%	144.8%
수정손해율(2)	9.5%	197.5%	181.2%	13.1%	96.5%
수정손해율(3)	7.1%	148.1%	135.9%	9.8%	72.4%
정부부담비율(1)					27.1%
정부부담비율(2)					0.0%
정부부담비율(3)					0.0%

- 주) * 상기실적은 주계약실적 기준임
 * 수정보험료(1)은 2004(가마감)년 요율수준 기준임
 * 수정보험료(2)은 2005년에 50%의 요율인상을 가정
 * 수정보험료(3)은 2005년에 100%의 요율인상을 가정

마. 개선방안

□ 국가재보험 모델 및 인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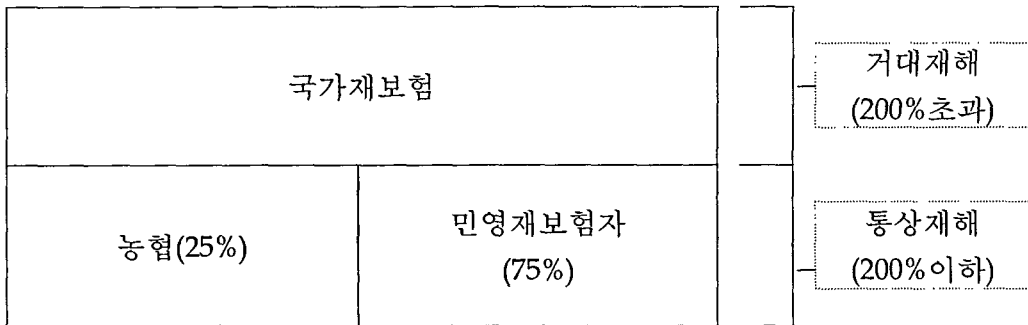
- 농협이 원보험사업자로,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자로 사업에 참여하며 통상재해액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험을 부담함
 - 인수비율은 1차적으로 원보험사업자가 20%~30%인수,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으로 70%~80%인수한 후, 손해율 200%~300%초과하는 위험은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 국가의 재보험료 분담비율은 보험료 및 보험금 규모에 따라 가변적임
- 위험분담 수준은 계약체결시 시장상황,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다음의 인수비율로 최종 결정됨

- 통상재해 : 손해율 200%이하 ⇒ 농협 25%, 민영보험사 75%
- 거대재해 : 손해율 200%초과 ⇒ 국가재보험

* 원수사업자인 농협의 책임을 상향 조정(10%→25%)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

그림 2-7. 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 T/F 논의중 직·간접적으로 민영재보험자로 참여의향을 보이거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민영보험사는 현대, 삼성, LG, 동부 등임

4. 재원조달 방법

가. 개선필요성

- 연이은 대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적 악화로 인해 2002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시장이 붕괴됨
- 2002년 농작물재해보험시장의 위험분산시스템의 붕괴로 2003년 농협에서 위험을 전액 인수한 결과 대재해로 인해 사업주체의 보험금 지급불

농사태 발생

- 2003년 거수보험료는 172억원인 반면 지급보험금은 499억원에 달해 농협은 327억원의 손실을 입음
- 국가가 재해손실금을 특별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보험금을 차입하여 지급 완료함
- * '03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04년 예산에 재해보험 특별지원금 284억원을 긴급 편성
- o 따라서 불안정한 위험분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나. 국가재보험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방법

- o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의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방법에는 일반회계방식과 특별회계방식, 기금방식이 있음

1) 일반회계

- o 일반회계는 목적세를 통하지 않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정부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사용됨
 - 일반회계의 경우 국회의 심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어 해당년도에 집행되어야 하고 특정수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o 일반회계방식은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경우 가장 현실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거대재해 발생주기를 예측할 수 없어 보험금으로 지급할 필요 재원을 일반예산에서 매년 사전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며 특정된 재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기가 어려움

2) 특별회계

- 예산회계법 제9조 2항에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로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재원조달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금의 형태가 혼재하여 있으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됨
- 농특회계는 농어민 복지 및 지역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재원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 재해보험사업은 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사업인데 반해 농특회계는 한시적이며 세입부족으로 세출을 이월시킬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험재원으로는 부적합함

3) 기금

- 예산회계법 제7조로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관리기본법 제 3조에서 “기금관리주체는 당해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금운영이 특정사업에 제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다양한 수입원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기금의 확정은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나 집행절차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확보되어 있음
- 기금은 거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기금에서 적기에 지급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농업경영 소득의 안전망 구축 취지에도 부합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음

□ 기금과 특별회계의 비교

1) 법률적 비교

- 예산회계법 9조에서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음"
- 동법 7조에서 기금은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기금관리법 3조에서 "기금관리주체는 당해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금운영이 특정사업에 제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포함)의 증액없이 특정사업을 지원하고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2) 여유자금의 활용 및 탄력성

- 특별회계의 미집행액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稅計잉여금으로 환수되나, 기금의 미집행액은 기금에 적립되어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음
 - 기금은 주요항목기준으로 30% 범위내에서 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음

3) 지출과 수입의 연계성

- 기금이 특별회계에 비해서 지출과 수입의 연계성이 높음
 - 목적세나 부담금의 측면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지출과 수입의 연계라는 측면에서는 기금이 특별회계에 비해서 우월함

- * 국민연금의 경우, 부담자 및 수익자가 동일(계약성이 강함)하나 농안기금과 같이 수혜자(농가나 농산물유통공사)의 부담없이 혜택만을 받는 기금도 있음
-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세인 교통세가 재원의 일부를 차지하나, 대체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에서 결정되어 이 세입에 대한 지출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지출·수입의 연계성이 미약함(목적세의 역할미흡)
 - 특별회계는 여러부처와 관련이 있어 단일부처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지출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계정이 많음
 - 또한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지출과 수입을 연계 시키는 것은 유용하지 않음

표 2-12.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 분	기 금	예 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1. 설치사유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2.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사업수행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3. 확정절차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수립 ○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좌동
4. 집행절차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 좌동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6. 계획변경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 추경예산편성	○ 좌동
7. 결산	○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 좌동	○ 좌동

4) 장기적인 재원조달

- 사회보장 및 보험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여유재원 활용 및 장기적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이 단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예산과 특별회계보다 유리함

□ 기금설치의 타당성 분석

-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4(기금신설에 관한심사)

표 2-13. 기금신설에 관한 심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기금설치의 항목별 타당성

1) 부담금 등 기금재원의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 기금의 목적인 재보험금 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중의 하나인 재보험료로 충당되므로 연계성이 높음
 - 다만, 일시적으로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책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보험금 지출을 위한 사용재원은 재해보험료 및 이월잉여금, 차입금, 정부출연금 등의 순서를 유지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특성으로 인한 신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의 규모는 거대하므로 이러한 재해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조성해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금은 피해보상 또는 복구자금으로 신속한 지급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급재원의 사전적립이 없더라도 책임액은 우선 지급되도록 신속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매년 지급되는 보험금은 신속적이며 보험금지급의 적정성을 위하여 자율적인 지출이 필요함
 -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고의 빈도와 심도에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발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여부와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음
 -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덕적 위험이 늘 상존하므로 보험금지급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한 비용지출 등 일정범위내에서 자율적 지출이 필요한 사업임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 기존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농어촌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 농안기금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특별회계는 농어촌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는 목적사업이 상이함
 - 또한 향후 보험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거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지출재원의 자율성, 탄력성, 신속성이 요구되고 미래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기금방식의 재원조달방식이 적합함

□ 기금설치의 목적과 주요사업

1)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위험분산과 원활한 재보험금 지급

- 국가재보험의 지출시점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유동성·자율성이 확보되어 효과적으로 이상재해에 대처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가 안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참여할수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 기금 운영주체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효율성 증진사업 시행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농민 및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보험사기방지 활동 등 보험제도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이익의 창출이 가능함

* 미국농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에 의한 FCIC의 부수업무·농작물보험에 대한 홍보(지역사무소의 정보제공 및 전자홍보, Sec.508(a)(5))
· 보험금지급절차와 기준의 검증, 보험사기방지(Sec.508A(m)(3))

3) 정부재정 지출의 안정화

- 재해지원 예산의 변동성 감소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안정화 되고 체계적인 자연재해대책 수립이 가능함

표 2-14. 기금의 주요사업

-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보험 사업주체와 재보험계약의 체결 · 재보험료의 결정 및 수납 · 재보험금 심사 및 지급 · 재원조성을 위한 채권발행 및 차입 · 잉여자금의 운용 등
-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을 위한 농민 및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활동 · 재보험사업에 대한 적정성 점검

다. EML 추정을 통한 정부기금의 산출

- 정부의 재보험기금은 기본적으로 태풍 루사, 매미 등 거대손해가 향후 다시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위험분산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임
- 정부의 재보험기금 적립 필요액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방식, 연간 EML(Estimated Maxium Loss)금액 및 재해발생 주기, 재보험방식, 연도별 손해를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러한 영향요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기금은 정부의 일회성 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운영되는 한 계속적립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궁극적인 기금 필요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 추정의 기본전제

- 연간 EML(Estimated Maxium Loss)의 추정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은 3개년 관찰기간을 갖고 있음
 - EML은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가능액을 평가한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보험책임액, 재해의 발생주기,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경험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연도의 손해액을 EML

로 추정하여 향후 동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피해액을 추산

○ 연간증가율의 반영

- 영업성장율을 10%로 가정하여 순보험료, 총지급보험금, 추정최대지급 보험금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품목확대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증가

○ 국가의 초과위험인수율을 200%로 가정하여 산출

○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율

-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년 평균이율 3.6% 적용

□ 정부기금의 산출

- 과거 최대손해실적을 고려하여 추정한 국가재보험기금 필요액은 300 억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됨

표 2-15. 정부기금의 필요제원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5년평균
추정순보험료	32,997	36,297	39,926	43,919	48,311	
추정최대보험금	94,107	103,518	113,869	125,256	137,782	
통상재해액	65,994	72,593	79,853	87,838	96,622	
추정국가부담액	28,113	30,924	34,017	37,418	41,160	
현재가치환산금액*	28,113	29,850	31,694	33,652	35,730	31,808

* 이자율 3.6% 가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기금추정의 기본조건

- 추정국가부담액은 Stop Loss방식(200%)를 가정한 통상재해액을 추정 최대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산출
- 2004년 추정최대보험금(EML)은 2003년도 손실율에 2004년도 보험가입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

○ 기금추정의 한계

- 국가재보험 모델에서 Stop Loss 손해율을 200%로 하는 경우로 가정하였으나, 세부협약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금필요액은 증감될 수 있음
- 원보험은 농협 및 민영보험사가 100%위험을 보유함을 가정하였으나, 100% 보유가 안되는 경우 국가부담은 추가될 수 있음
- 2003년도 피해율을 EML로 하였으나, 최근 기후를 감안할 때 더 큰 재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EML의 추정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재보험기금 필요액 300억원은 제한된 조건하에서의 추정액이며 실제 손해상황, 민영보험사 보유정도, 요율인상수준, 국가재보험의 세부조건 등에 따라 가변성이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기금의 재원

- 재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은 표 2-17과 같음

표 2-16.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기금의 재원

수 입 항 목	지 출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가 납부한 재보험료 · 정부의 출연금 ·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자금 · 잉여자금의 운영수익 · 정부보증의 채권발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보험금 및 수수료의 지급 · 보험금지급을 위한 차입자금의 원리금 상환 · 발행채권의 원리금 상환 · 기금사업 수행의 부대비용

라. 외국사례

□ 미국

- FCIC가 관리하는 재보험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중 정부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보험료의 수입과 연방예산의 지원액을 수입으로 하여 운영됨

II. 국가재보험제도 도입방안

- 미국의 농작물보험기금은 보험료지원, 보험금지급, 운영경비 등의 재원 지출에 사용하는 재보험 포함의 원보험 기금으로 연간 약 30억불(2004년 기준)예산소요

표 2-17. 미국 농작물보험 연방예산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2년	2003년(추정)	2004년예산
- 총지급보험금①	3,161	4,251	3,090
- 농가부담보험료②	△1102	△1,139	△1,175
- 순보험금(①-②)	2,059	3,112	1,915
- 관리·보급(Delivery)/기타	1,100	751	1,169
- 사업비삭감	0	0	△68
정부부담비용	3,159	3,863	3,016
- 기금 상세내역			
○ 보급/기타 관리비용	684	680	721
○ 총보험금	3,161	4,251	3,090
○ 언더라이팅 이익	342	0	370
○ 사업비삭감	0	0	△68
○ 소계	4,187	4,931	4,113
○ RMA운영비용	74	71	78
○ 총프로그램비용	4,261	5,002	4,191
○ 농가부담보험료	△1,102	△1,139	△1,175
○ 정부부담비용	3,159	3,863	3,016
○ 농작물보험기금	3,085	3,792	2,938
○ RMA운영비용	74	71	78
○ 정부부담비용	3,159	3,863	3,016

□ 일본

- 일본은 재보험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간 약 687억엔(2003년 기준)예산소요

표 2-18. 일본 농업공제 예산 현황

(단위 : 천엔)

예산과목	예산액
(항) 농림수산성	4,184
(항) 농업보험비	122,606,844
(목) 농업공제사업특별사무비보조금	242,918
(목) 농업공제사업운영기반강화대책비보조금	731,054
(목) 농업공제사업사무비분담금	52,941,187
(목)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전입 농업계정전입(28,425,755) - 공제부금국고부담(28,200,588) 가축계정전입(32,001,838) 과수계정전입(3,930,516) - 공제부금국고부담(전액) 원예시설계정전입(3,011,567) 업무계정전입(1,322,009)	68,691,685
(항) 농업진흥비	0
합 계	122,611,028

마. 개선방안

- 정책부서간 협의를 통해 국가재보험의 재원조달방법을 기금방식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300억원 규모의 재보험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됨

여 백

Ⅲ.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산출

1. 효율산출 원칙 및 방식

가.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현황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보험료부담 등 제도운영상의 현실적인 제한성, 정부의 손실보전 등 정책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15년 payback³⁾기간을 설정하여 효율산출하고 있음
 - payback기간의 설정은 급격한 효율인상에 따른 농가의 보험가입거부 등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반영되었음
 - 그러나 2002년 거대재해로 인한 영업실적악화로 민영보험사업자의 시장철수는 국가재보험제도와 같은 위험분산체계의 부재는 물론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가격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기인함
-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은 손해실적, 재보험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보험사업자는 효율수준에 따라 가격인상, 인수물량축소, 시장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개선필요성

- 가격결정과 안정적 제도운영의 상충성
 -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책보험으로 도입되었기에 손해실적과 재보험상황 등 전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가격결정은 안정적인 제도운영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동 제도의 정책적인 도입취지와 보험사업자의 사업성확보를

3) pay-back이란 대형손해를 당해연도에 전부반영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배분하여 배분하고 결정된 수준을 다시 공간적(지역적)으로 배분하여 대형손해로 인한 영향을 안정화시킴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책임한도의 일정 범위내에서 보험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 통상적인 재해의 범위내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의 결정 등 최대한 보험사업자에 자율권을 주어 사업성을 확보케 함
- 국가개입을 통한 가격안정
 - 보험논리에 의한 제도운영을 지향하지만 농민부담을 고려한 가격인상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통한 시장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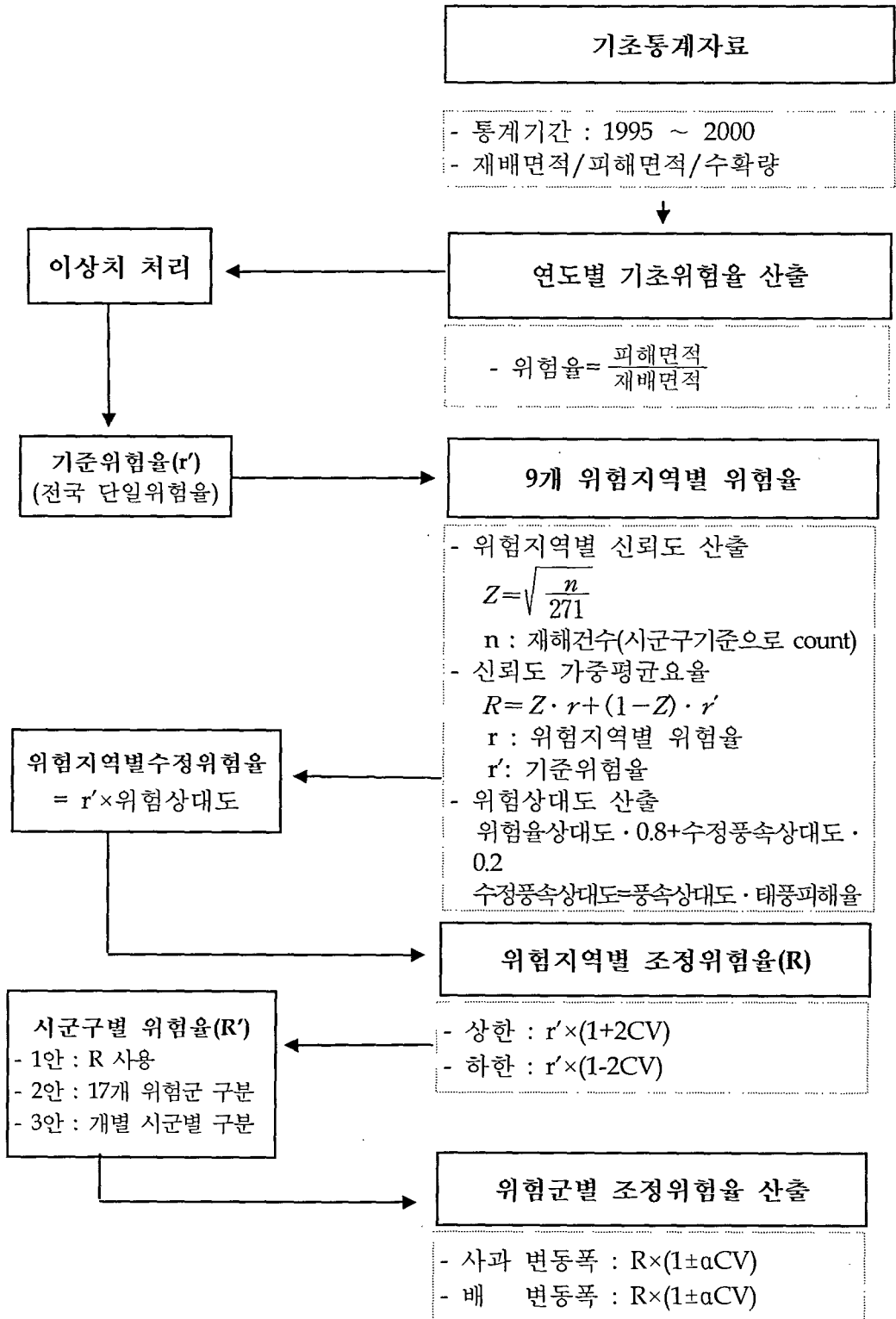
나. T/F 논의내용

-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영보험의 원리에 의한 효율산출이 필요
 - 당초 민영보험사는 과손해액 배분기간(pay-back period)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의 단축을 요구함
- 논의가 진정되면서 민영보험사는 효율산출방법을 Cat. model방식으로 전환하고 효율인상 수준도 100%인상을 요구함(영업보험료 기준)
 - 또한 보험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요인을 반영한 적극적인 지역별 효율차등화도 요구함
 - 민영보험사의 인상요구안 100%에는 순보험료 48% 인상, emergency & contingency factor로 영업보험료 기준의 25%인상(순보험료 기준 48%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산출 방법

1) 2001년 신규 순보험료 효율 산출(순보험료법)

그림 3-1. 순보험료법에 의한 효율산출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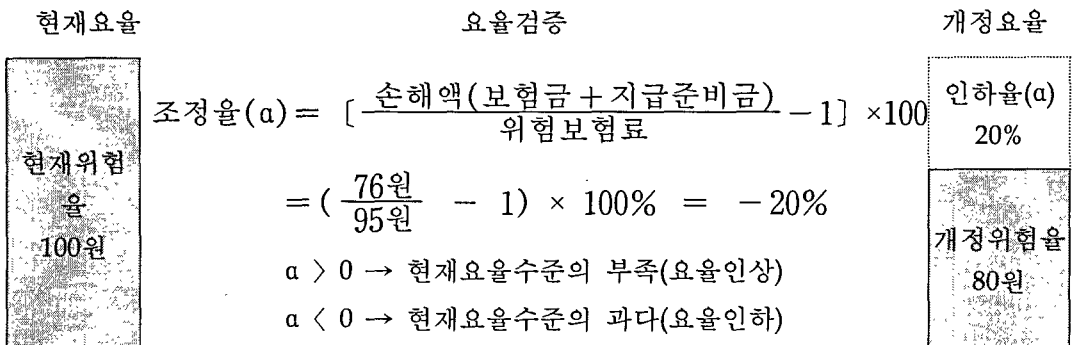
-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요율산출은 대상작물에 대해 작물통계 및 피해통계에 의하여 기초위험율을 산출하고 기상자료에 의해 기초위험률을 보정하였음
 - * 2001년도 순보험료법에 의한 요율산출방법은 그림3-1산출 flow 참고
- 사용통계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작물통계」, 행정통계 및 농작물 피해통계 (농림부), 기상자료(기상청)

2) 향후 실적에 의한 요율검증 및 조정

□ 보험요율 조정요인 산출

- 보험료는 기준담보비율의 현행요율을 기준으로 on-level하여 수정보험료를 산출하였으며 손해액은 기준담보비율의 손해액으로 환산하여 상품개선효과를 반영하여 산출함
- 조정대상보험료는 대상작물에 적용할 요율중 부가요율(사업비, 이익 등을 위한 보험료 해당분)이 제외된 순수하게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때 그 피해보상으로 사용될 재원에 해당하는 순보험요율(pure premium rate)을 대상으로 함

그림 3-2. 손해율법에 의한 요율조정



□ 초과손해액의 기준 및 배분방식

- 보험가격은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일치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최근 3개년간의 보험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품목별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요율인상폭이 크게 발생하므로 회수기간의 개념(pay back)을 도입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
- 특정년도에 발생한 손해 중 순보험료를 초과한 부분(초과손해액부분)으로 나누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특정년도부터 향후 배분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손해액에 반영하여 매년 손해율 산출

$\text{배분금액} = \text{특정년도 초과손해액} / \text{배분기간}$

- 통계기간의 설정
 - 자연재해의 특성상 손해변동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찰기간을 갖을 필요가 있어 통계기간을 최소한 10개년으로 결정
 - * 미국의 농작물보험이나 일본의 농업공제에서도 20년 보험실적에 의한 경험요율산출방식(experience rating method)에 의한 보험요율 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배분기간의 설정
 -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실적과 태풍발생의 특성(주기적 태풍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으로 pay back기간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본 보고서는 주계약에 대해서 6개의 품목별로 5년, 15년 payback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payback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구분하여 요율조정을 산출

○ 초과손해액의 설정

- 초과손해액은 발생손해액중 순보험료를 초과한 부분이며 배분기간을 적용하였을 경우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통상손해율 200%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라. CAT. MODEL에 의한 요율산출

□ CAT. MODEL의 개요

- Cat. model은 exposure rating의 한 방법으로 태풍강도,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태풍모델에 의한 손해율을 예측함
- 태풍강도와 손해실적과의 상관관계 분석
 - 태풍강도의 측정은 태풍의 속도, 태풍과의 인접성, 태풍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함
 - 태풍강도와 최근 보험실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태풍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기대손해율을 추정하는 회귀식을 도출함
- 모델의 검증방법
 - 기대손해율 추정식에 의한 추정손해율과 실제손해율간의 격차의 정도를 측정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함
- Cat. model은 위험지역이나 보험실적이 없는 경우 태풍강도에 의한 요율수준 유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CAT. MODEL의 필요성

- 재보험자가 주로 거대손해를 수반하는 보험종목에서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됨
 - 최근 자연재해관련 보험종목에서 원보험 요율산출시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거의 사용사례는 없음
 - 다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homeowner's 거대위험 요율인상시 인정된 사례는 있음
-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경험실적에 의한 효율조정(experience rating method)을 사용하고 있음

□ CAT. MODEL의 결과

- Cat. model에 의한 민영보험사가 제시한 효율인상 수준은 영업보험료기준으로 100%의 인상(순보험료 기준 48%)을임

마. 보험계약자와 보험효율 산출원칙

□ 효율산출 원칙

- 보험효율산출은 보험단위당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험의 사회공공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보험효율의 산정원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음

- 적정성(adequacy)

- 적정성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약정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인수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도 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성을 의미함
-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보험회사들의 효율경쟁을 방지하여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됨
- 결국, 과거의 경험에 따라 산정된 보험효율은 적정성에 입각하여 장래 일어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실의 지급을 충분히 완수하고 보험기업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수 있도록 정해져야 함

- 공정성(equity)

- 보험집단내 개개의 위험에 대한 효율은 해당계약자의 위험의 크기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차별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 효율산정시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위험을 동종 또는 유사위험별로 분류하여 과거실적, 현재상황, 미래추세 등을 감안하여 손해율, 사업비율 등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위험별로 부당한 차별(unfair discrimination)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임

- 비과도성(not excessive)
 - 보험자가 효율산정시 너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효율수준의 상한선을 의미함
- 안정성(stability)
 - 보험요율이 갑자기 개정되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며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것임
 -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대손실위험을 담보위험에서 제외 하거나 신뢰도를 활용하는 방법등이 있으며 사용통계기간을 장기간 누적된 것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적응성(대응성, responsiveness)
 - 예상했던 예정손해율이 월등히 높거나 낮아진 경우 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균형을 잃은 적정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보험요율의 적응성임
- 단순성(simplicity)
 - 보험판매원들에게 취급용이성을 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보험상품의 가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건임

□ 계약자와 효율산출 원칙

- 효율산출원칙과 방법을 계약자인 농민이 전부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그러나, 가능한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이해를 쉽게 하는 효율산출원칙과 방법이 적합

2.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적현황

가. 연도별 실적

- 제도도입 첫해인 2001년도의 손해율은 40.6%를 시현하였으며 그 이후 연이어 434.5%와 290.3%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다시 42.7%(가마감 실적에 의함)의 양호한 손해율을 나타냄

표 3-1.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실적

(단위: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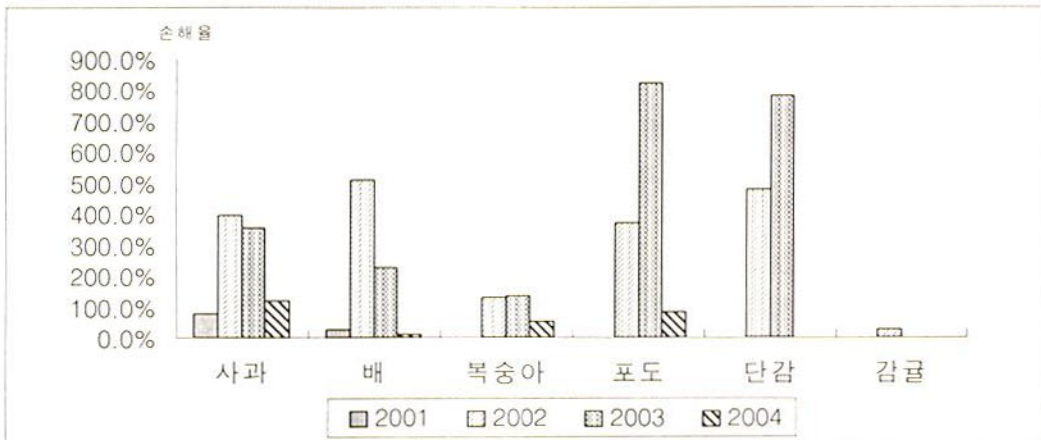
구 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순보험료	3,398	8,006	17,201	32,197	60,802
보험금	1,378	34,795	49,933	13,758	99,864
손해율	40.6	434.5	290.3	42.7	164.2

※ 2004년도 실적은 추정치이며 사업종료후 확정 실적은 변경될 수 있음(이하 동일)

나. 작물별 실적

- 복숭아, 감귤을 제외한 모든 품종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음
- 손해율이 불량한 품종은 포도(314.3%), 사과(215.8%), 단감(191.6%), 배 (135.9%)임.

그림 3-3. 농작물재해보험 작물별 연도별 실적



주)사과, 배는 2001~2004년의 실적, 이 외의 작물은 2002~2004년 실적임

표 3-1.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실적

(단위: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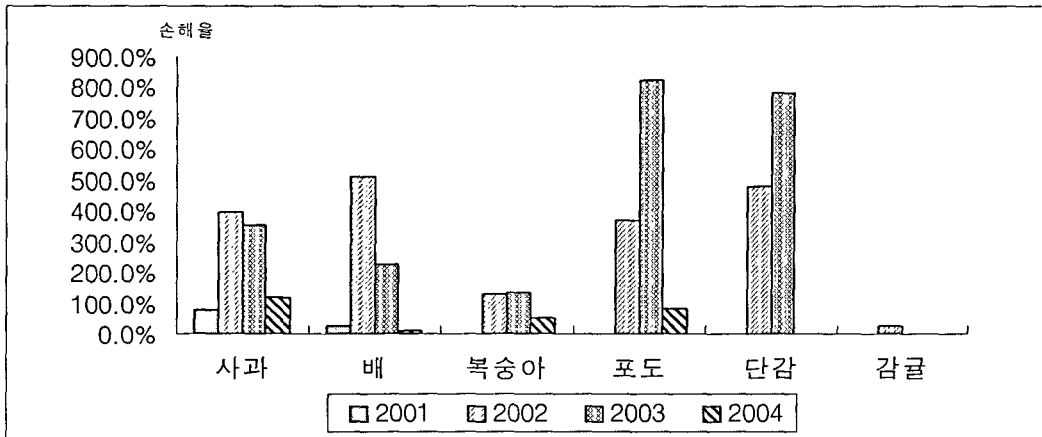
구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순보험료	3,398	8,006	17,201	32,197	60,802
보험금	1,378	34,795	49,933	13,758	99,864
손해율	40.6	434.5	290.3	42.7	164.2

※ 2004년도 실적은 추정치이며 사업종료후 확정 실적은 변경될 수 있음(이하 동일)

나. 작물별 실적

- 복숭아, 감귤을 제외한 모든 품종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음
- 손해율이 불량한 품종은 포도(314.3%), 사과(215.8%), 단감(191.6%), 배(135.9%)임.

그림 3-3. 농작물재해보험 작물별 연도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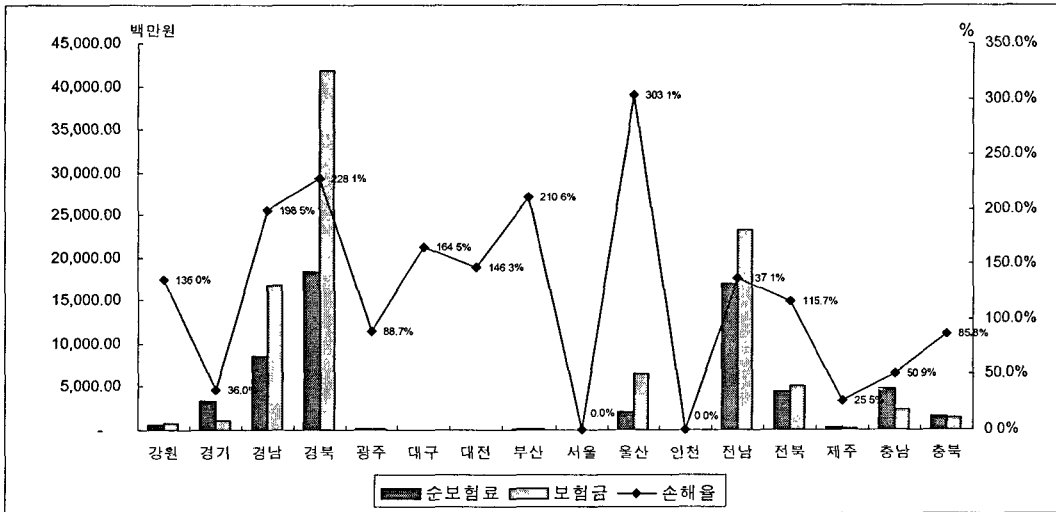


주)사과, 배는 2001~2004년의 실적, 이 외의 작물은 2002~2004년 실적임

다. 지역별 실적

-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제주, 광주 지역은 손해율이 100% 미만임.
- 특히 울산(303.1%), 경북(228.1%), 부산(210.6%), 경남(196.5%), 대구(164.5) 등 영남지역이 높은 손해율을 시현함.

그림 3-4.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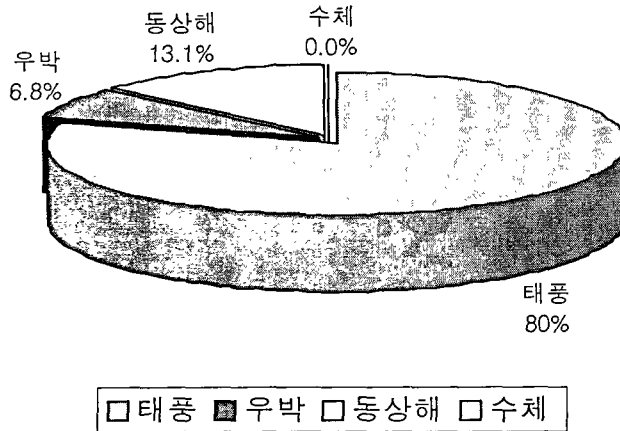


주) 2001~2004년까지 각 지역별 합산 실적임.

라. 손해원인별 실적

-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와 루사의 영향으로 예상대로 태풍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80%)이고 그 다음으로 동상해와 우박으로 인한 피해 비중이 각각 13.1%와 6.8%였음

그림 3-5.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원인별 분포



마.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도 분석

□ 손해발생 빈도

○ 사과(44.5%), 배(40.7%), 포도(27.5%), 단감(27.0%)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감귤의 경우 2003년 이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표 3-2. 농작물재해보험 손해발생빈도

(단위 : 건,%)

연도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합계	계약건수	17,650	23,575	4,657	4,246	6,225	3,534
	사고건수	7,855	9,598	694	1,166	1,683	16
	발생빈도	44.5	40.7	14.9	27.5	27.0	0.5
2002	계약건수	4,614	4,695	2,182	2,101	1,548	3,474
	사고건수	1,927	3,689	338	488	495	16
	발생빈도	41.8	78.6	15.5	23.2	32.0	0.5
2003	계약건수	5,151	8,053	1,060	836	1,365	57
	사고건수	3,156	5,103	193	512	1,185	-
	발생빈도	61.3	63.4	18.2	61.2	86.8	-
2004	계약건수	7,885	10,827	1,415	1,309	3,312	3
	사고건수	2,772	806	163	166	3	-
	발생빈도	35.2	7.4	11.5	12.7	0.1	-

□ 손해심도

- 사고1건당 평균손해액의 크기는 배(536만원), 감귤(503만원), 사과(458만원), 단감(350만원), 포도(318만원) 등의 순임. 감귤의 경우 2003년 이후 손해가 없음.

표 3-3.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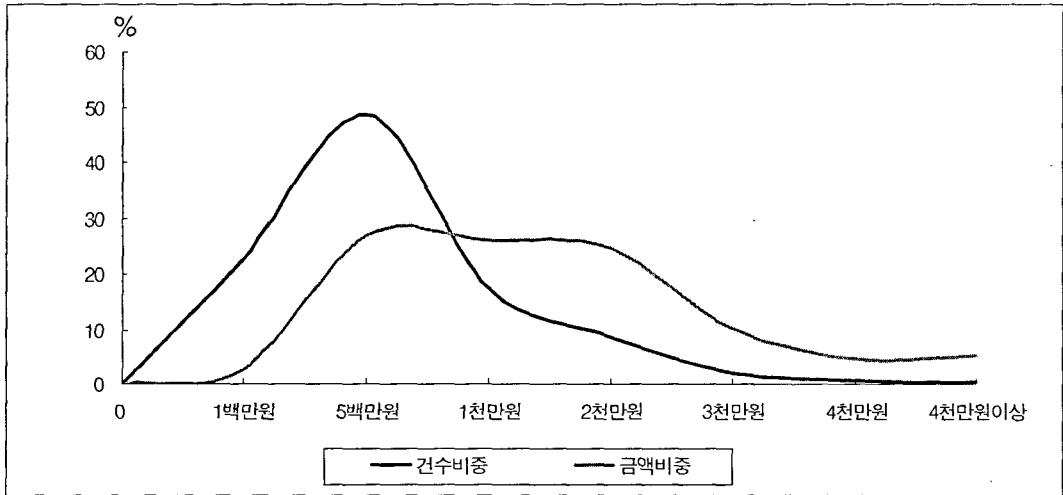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건)

연도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합계	총보험금	35,997,304	51,436,309	1,234,939	3,707,611	5,895,808	80,476
	사고건수	7,855	9,598	694	1,166	1,683	16
	평균손해액	4,583	5,359	1,779	3,180	3,503	5,030
2002	총보험금	8,655,956	22,843,885	508,444	1,203,443	1,487,932	80,476
	사고건수	1,927	3,689	338	488	495	16
	평균손해액	4,492	6,192	1,504	2,466	3,006	5,030
2003	총보험금	16,223,489	26,796,898	409,818	1,991,097	4,392,951	-
	사고건수	3,156	5,103	193	512	1,185	-
	평균손해액	5,141	5,251	2,123	3,889	3,707	-
2004	총보험금	1,117,859	1,795,526	316,677	13,071	14,925	-
	사고건수	2,772	806	163	166	3	-
	평균손해액	4,011	2,228	1,943	3,091	4,975	-

□ 손해분포

- 사고별 건수분포는 1백만원~5백만원 사이의 사고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 이하의 사고건수가 전체 사고건수의 88.4%의 비중을 차지함.
- 손해금액별 분포는 5백만원~2천만원 사이의 손해금액 비중이 77.4%에 이르고 있으며, 건당 대형손해의 위험은 크지 않은 편임.
 - 4천만원 초과손해의 건수 및 금액은 2002년 이후 감소하여 2004년에는 건수 기준 0.1%, 금액기준 1.5%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3-6. 농작물재해보험 손해구간별 사고건수 분포



3.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조정요인 추정⁴⁾

가. 농작물보험 경험실적

○ 4개년(2001~2004)간 농작물보험의 수정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4. 농작물재해보험의 수정실적

(단위 : 천원, %)

품목	수정보험료	수정보험금	수정손해율
사과	16,711,850	28,643,501	171.4%
배	42,118,808	55,143,938	130.9%
포도	1,512,728	3,711,187	245.3%
복숭아	1,448,488	1,156,812	79.9%
단감	2,521,870	4,795,185	190.1%
감귤	277,762	64,577	23.2%

주) 2004년도 보험금실적은 가마감 자료임

4) 본 보고서에서 효율조정요인의 추정은 2004년 실적이 가마감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향후 2004년 최종실적에 의하여 확정될 것임

나. 조정요인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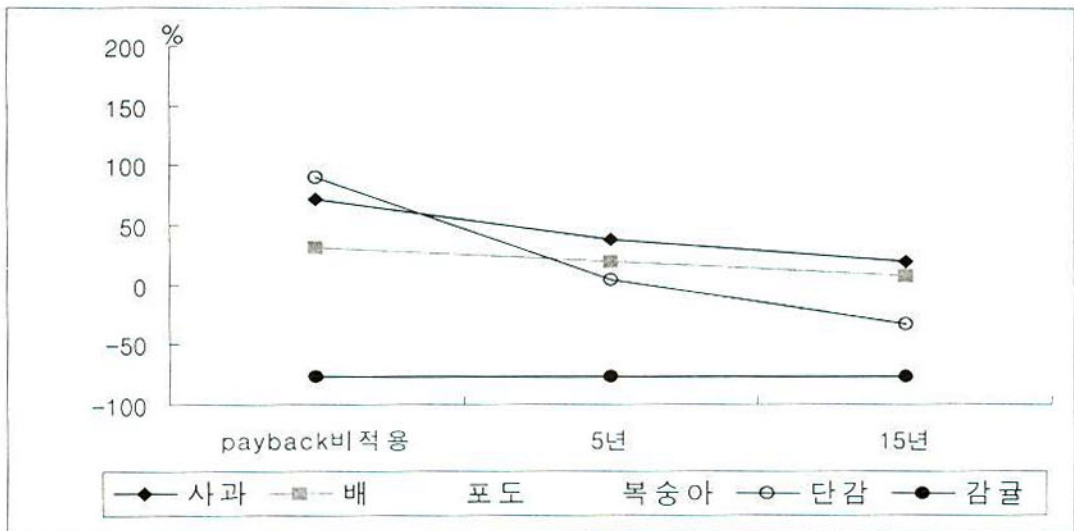
-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의 6개품목에 대해 주계약을 대상으로 초과손해액 200% 기준으로 배분기간(15년, 5년)을 설정하였을 경우와 배분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구분하여 조정요인 산출

표 3-5. 품목별 효율조정요인 추정

구 분	Pay Back기간별 당해년도 효율조정요인(%)		
	payback비적용	5년	15년
사과	71.4	38.5	20.0
배	30.9	19.1	8.1
포도	145.3	87.1	59.8
복숭아	-20.1	-20.1	-20.1
단감	90.1	4.7	-33.3
감귤	-76.8	-76.8	-76.8
계	46.0	24.0	9.5

- 주) 1. 주계약 기준이며 pay back의 배분은 초과손해율 200%기준임
- 2. 2004년 가마감 실적을 포함한 것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그림 3-7. 배분기간(pay back)별 효율조정요인



나. 조정요인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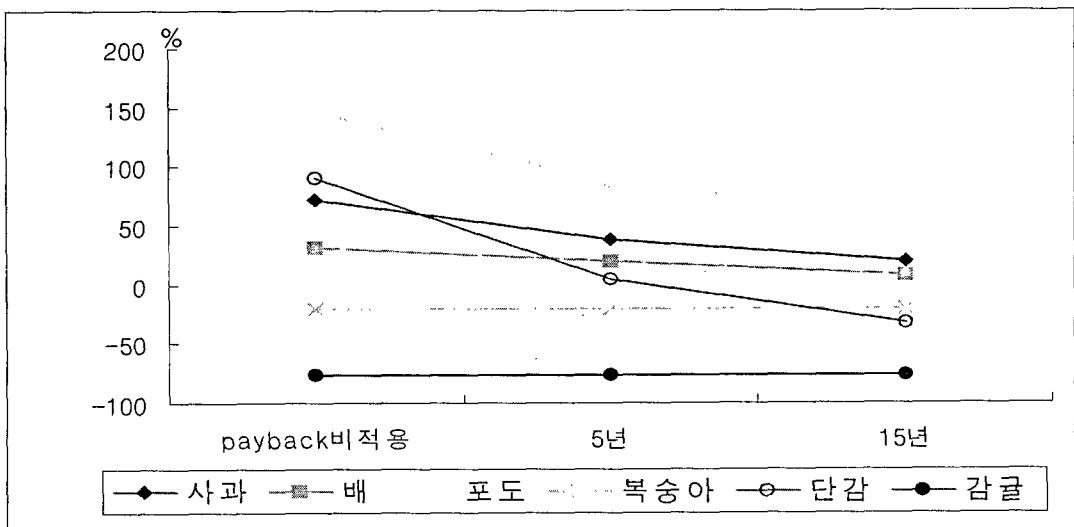
-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의 6개품목에 대해 주계약을 대상으로 초과손해액 200% 기준으로 배분기간(15년, 5년)을 설정하였을 경우와 배분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구분하여 조정요인 산출

표 3-5. 품목별 효율조정요인 추정

구분	Pay Back기간별 당해년도 효율조정요인(%)		
	payback비적용	5년	15년
사과	71.4	38.5	20.0
배	30.9	19.1	8.1
포도	145.3	87.1	59.8
복숭아	-20.1	-20.1	-20.1
단감	90.1	4.7	-33.3
감귤	-76.8	-76.8	-76.8
계	46.0	24.0	9.5

- 주) 1. 주계약 기준이며 pay back의 배분은 초과손해율 200%기준임
- 2. 2004년 가마감 실적을 포함한 것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그림 3-7. 배분기간(pay back)별 효율조정요인



다. 조정효과 추정

표 3-6. 품목별 효율조정효과 추정

(단위 : 천원)

구 분	Pay Back기간별 효율조정효과		
	15년	payback비적용	5년
사과	1,573,807	5,618,226	3,032,849
배	1,550,512	5,910,759	3,659,691
포도	336,872	818,510	490,715
복숭아	-117,515	117,515	-117,515
단감	-532,749	1,440,703	74,467
감귤	-73	-73	-73
계	2,810,854	13,670,609	7,140,134

주) 2004년 주계약 실적기준의 조정효과 추정임

라. 개선방안

- pay-back 적용의 폐지 및 효율산출방식 개선
 - 원칙적으로 pay-back기간의 적용에 대한 이견이 많고 민영보험사에서 적용자체를 거부함
 - 거부이유는 pay-back 적용으로 효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충분한 효율인상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임
- 보험실적통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검증된 Cat. Model에 의한 효율산출방식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05년 이후 효율산출시 검토
 - 다만, 지난 3개년간의 꾸준한 효율인상이 있어왔던 바 지나치게 민영보험사의 사업성을 감안한 과도한 효율인상은 가입률저하 등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근본취지와 배치될 수 있음
 - 또한, 역선택방지 및 도덕적위험 방지를 위한 지역별 효율차등 강화, 언더라이팅 개선 등에 대해서 2005년 효율산출시 검토

4. 급격한 보험요율인상에 대한 정부지원

가. 개선필요성

- 급격한 보험료인상을 전액 농민부담으로 하는 경우 보험수요의 급감으로 보험제도의 유지 및 정책신뢰성에 악영향을 초래함
 - 급격한 보험료 인상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보험가입을 거부

나. T/F 논의내용

- 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내년도 보험료 인상분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여 보험수요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다만, 순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비율 50%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정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다. 외국사례

미국

- 순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은 담보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음
 - 담보수준이 80%인 경우 48%지원

일본

- 순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50%임

라. 개선방안

- 2005년 요율인상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함
 - 2004년 보험실적이 양호하였으므로 농민입장에서는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민영보험기준으로 볼때 보험요율에 대한 인상요인은 큰 상태임
- 따라서 금번 요율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보험료인상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o 그러나 요율인상분에 대한 정부부담은 지원정책일뿐 이므로 단계적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매년 보험료 조정시 2005년 정부추가부담분의 10%씩을 농민부담으로 이전하여 해소하는 방안이 적절함
 - 다만, 요율인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하요인의 반영을 억제하여 정부 부담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있음
- o 가정에 의한 시뮬레이션
 - 2005년도 보험요율 인상율을 50%, 70%, 100%로 가정하여 매년 보험요율 인상(인하)율을 반영할 경우 년도별 순보험료 부담액 및 정부지원율을 추정함

표 3-7. 보험효율 인상(가정)에 따른 정부지원을 추정

인상율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0%	전체조정	-	50%	30%	20%	-30%	-10%	-20%	
	순보험료	330	495	644	772	541	486	389	
	지원전	지원을	50%	50%	50%	50%	50%	50%	50%
		농민부담	165	248	322	386	270	243	195
		정부부담	165	248	322	386	270	243	195
	지원후	지원을	50%	67%	64%	61%	53%	50%	50%
		농민부담	165	165	231	300	255	243	195
		정부부담	165	330	413	472	285	243	195
	70%	전체조정	-	70%	30%	20%	-30%	-10%	-20%
순보험료		330	561	729	875	613	551	441	
지원전		지원을	50%	50%	50%	50%	50%	50%	50%
		농민부담	165	281	365	438	306	276	221
		정부부담	165	281	365	438	306	276	221
지원후		지원을	50%	71%	68%	66%	58%	51%	50%
		농민부담	165	165	231	300	255	268	221
		정부부담	165	396	498	575	357	283	221
100%		전체조정	-	100%	30%	20%	-30%	-10%	-20%
	순보험료	330	660	858	1030	721	649	519	
	지원전	지원을	50%	50%	50%	50%	50%	50%	50%
		농민부담	165	330	429	515	360	324	259
		정부부담	165	330	429	515	360	324	259
	지원후	지원을	50%	75%	73%	71%	65%	59%	50%
		농민부담	165	165	231	300	255	268	259
		정부부담	165	495	627	729	465	381	259

IV.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1. 현황

가. 손해평가방법

- 농작물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보험대상농작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 평가인으로 위촉하거나,
 - 보험업법상 금감위에 등록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현재 손해평가방법은 전문손해평가인력의 확보의 한계 및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특성 등으로 농협직원 및 현지 농업인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농림부장관 고시)
 - 현지 농업인의 선발은 가입농가 10호당 1인을 선발
 - *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인력 현황
 - FY2002 : 약 2,260명, FY2003 : 3,000명 수준
- 현지 농업인을 활용한 손해평가업무에 대한 장·단점
 - 장점 : 농작물손해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 단점 : 손해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음

나. 손해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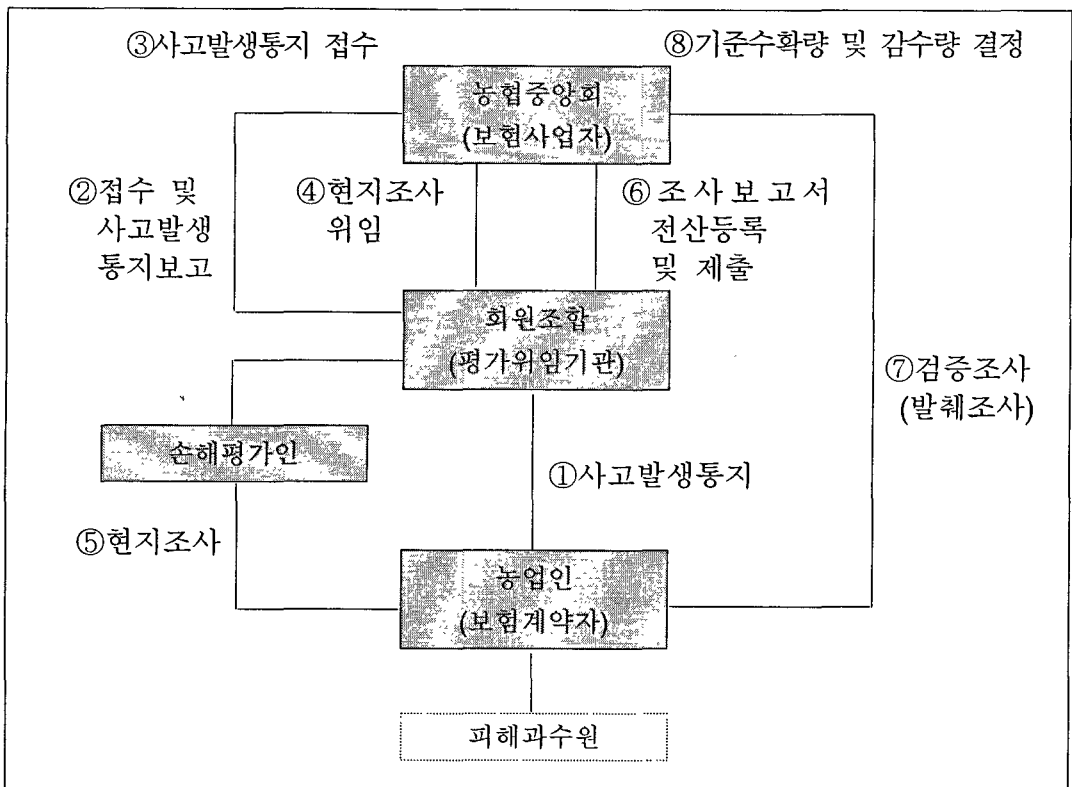
- 전체적인 손해평가절차는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기본적인 절차로 손해사실의 조사와 그에 대한 검증단계를 갖추고 있음

※ 아래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절차 도해” 참조

- 다만, 손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1차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거나 무시되고 있으며 검증결과에 대한 조치 또는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절차 도해

그림 4-1.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절차



① 사고 발생통지(계약자→회원농협) → ② 접수 및 통지보고(회원농협→중앙회) → ③ 사고발생 통지 접수(중앙회) → ④ 현지조사 및 손해평가 위임(중앙회→회원조합·손해평가인⁵⁾) → ⑤ 현지조사 및 손해평가 실시(회원조합·손해평가인) → ⑥ 조사보고서 제출(손해평가인→중앙회) → ⑦ 손해평가결과 검증⁶⁾(중앙회) → ⑧ 손해액 결정(중앙회)

5)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2인이상으로 구성.

6) 손해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확인을 위하여 일정수의 가입자를 임의추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2. 개선필요성

가. 손해평가방법

- 현지 농업인의 온정적 손해평가로 인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 Moral Hazard의 발생우려가 있으나
- 현지 농업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 현지 농업인의 전문성과
 - 동시다발적 손해발생이라는 농작물재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非常인력 풀 구성이 필요(겸업 손해평가인이 현실적 대안)
 - 예산제약으로 손해평가비용의 현실성 결여(재해보험사업자 주장)
 - 예산책정된 운영경비로는 인건비, 출장비 등을 고려할 때 현지 인력사용이 불가피
 - * 정부지원 운영비 현황
 - 2002년 69억5천3백만원, 2003년 77억2천8백만원

나. 손해평가절차

- 손해조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손해평가 검증체계의 미흡으로 도덕적 위험 및 보상형평성 저해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손해평가 근거가 되는 낙과수를 손해조사 전에 철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손해평가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 이런 경우 대응조치 또는 손해평가방법이 없어 보험가입자 일방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 또한 1차 손해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액 과다청구 농민이 이익을 보는 부당한 손해보상 구조가 지속
- 검증절차 실행을 구체화 하고 검증결과 발견된 부적정성에 대한 조치 및 제재절차를 보완할 필요

3. T/F 논의내용

- 전문손해평가인제도 및 손해평가인 상피제도를 통하여 객관적 손해평가 제도 정착
 - 전문손해평가 인력의 대량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 시행방안을 채택함이 타당함
- 손해액일괄감액제도, 부당손해평가에 대한 제재방안 강화등은 법체계상 문제와 손해평가인 대부분이 아직은 농민이라는 점에서 당장 시행에는 한계가 있음

4. 외국의 사례

□ 미국

1) 손해평가 운영

- 미국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인 18개 민간보험사업자가 직접손해평가를 하거나 전문손해평가 법인에 위탁하여 실시
 - 1981년 이전까지 미국 농작물보험의 손해사정은 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에서 고용한 민영의 손해사정인이 담당하였음
- 현장조사(field inspection) 및 보고서 검토(file review)를 통한 손해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손해평가검증을 통한 지역별 일괄 손해액 조정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조사(file inspection)는 프로그램 이행여부, 보험료 및 보상여부, 작물의 경작여부, 대리점과 손해사정인의 평가절차 준수여부 등에 관해 방문조사 실시
 - 보고서 검토(file review)는 클레임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가입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2) 손해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방안

- 동일 손해사정인이 동일 보험계약자 클레임을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FCIC는 자동적으로 손해검증을 실시
-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제한
 - 보험계약자와 업무적, 재정적, 법률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 계약자와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를 가진 자등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음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이 계약자와 사업상, 재정상 법률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FCIC에 서면 통보해야 함
- 보험대리점이나, 대리점직원 등은 상품판매를 하는 지역에서의(인접지역 포함) 손해평가를 할 수 없음

표 4-1. 보험회사에 대한 FCIC의 제재조치

- ※ FCIC의 제재조치
 - FCIC는 손해평가절차에 대한 법률 및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재보험참여를 제한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 및 운영비 삭감 및 보조제한

-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엄격한 손해사정기준이 필요하며 손해사정인의 정직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일본

1) 손해평가인 구성

- 현지에서 1차적으로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손해평가원과 1차 조사결과에 대해 Cross-Checking을 하는 공제조합연합회 소속의 손해평가위원으로 구성
 - 전국적으로 약 13만 여명이 활동
 -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손해평가는 해당지역의 농업인을 손해평가인

으로 위촉하여 실시

- 현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발취조사는 현내 과수전문가(공무원, 조합직원 등)로 구성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

2) 손해평가 방법

- 농업인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실시하며 3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아침 5시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1개반이 20~30농가의 손해평가를 목측으로 실시
- 일본은 2중적 손해평가검증제도와 손해액조정이 가능한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 농민의 손해액을 일괄감액은 어려움이 있다고 함
- 농업공제조합 또는 조합연합회의 손해평가보고에 대하여 1차적으로 연합회의 발취조사와 2차적으로 농림수산성의 통계자료에 의한 손해평가액 검정(檢定)후 최종손해액을 결정하는 절차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취조사에 의한 감액결정은 어려움이 있고 농림수산성의 통계자료 등을 통한 심사에 의한 검정을 적용하여 감액한 사례는 없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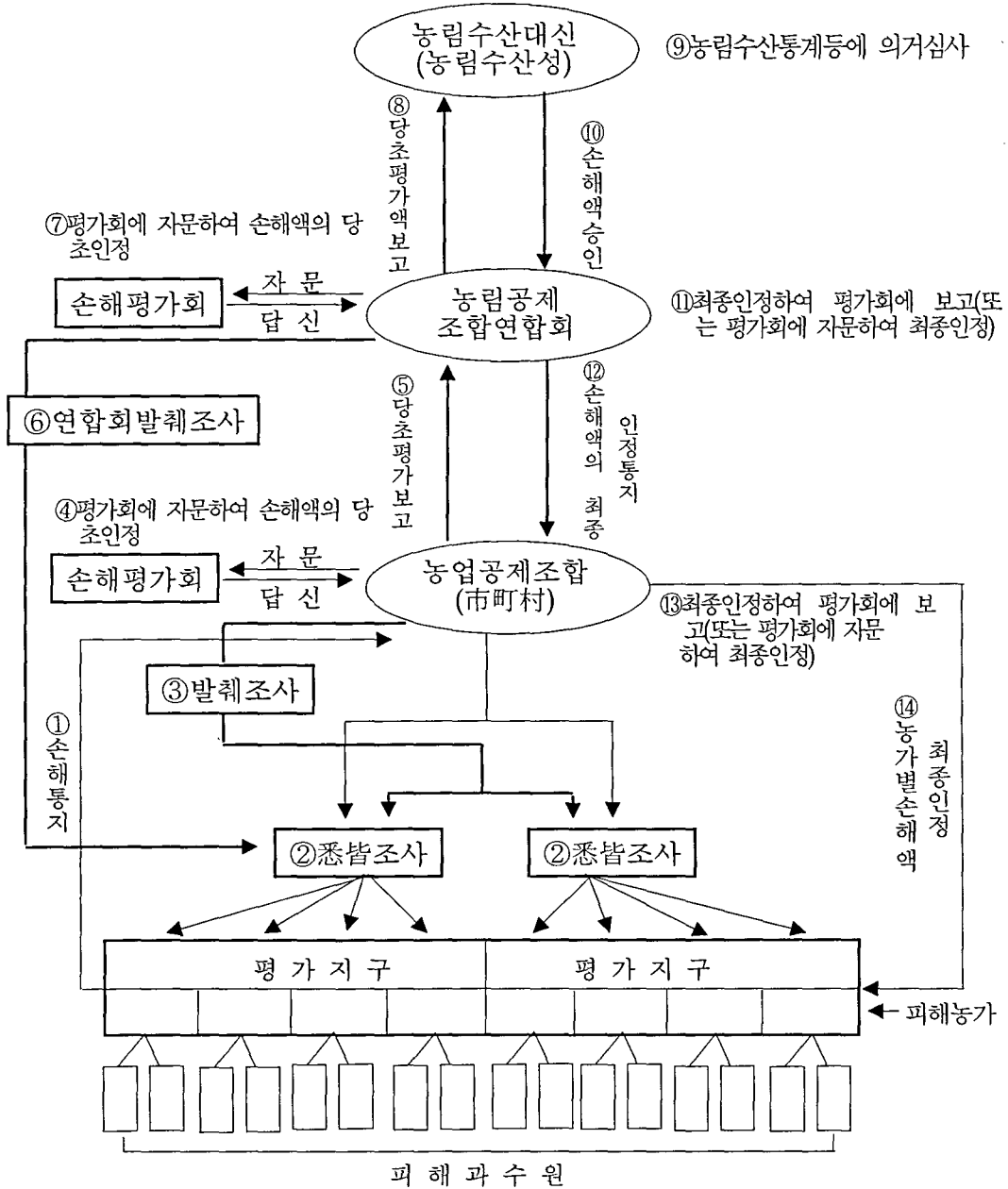
3) 일본 농업재해공제 손해평가 및 결정절차

※아래의 그림 4-2 참조

4)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

- 제도가 정착되어 손해평가인에 대한 별도의 소집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손해평가를 실시하기전에 현장에서 평가상의 주의점과 공정한 실시를 당부함
- 수확기 착과수 조사시 손해평가인간의 안목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에 출하되는 과실을 등급별로 수집하여 교육을 실시

그림 4-2. 일본 농업재해공제 손해평가절차



① 피해농가의 손해통지 → ② 평가지구를 설정하여 발취조사(조합) → ③ 일정수의 농가를 선정하여 발취조사의 수정(조합) → ④ 손해평가회에 자문(조합) → ⑤ 연합회에 자문회의 인정평가보고(조합) → ⑥ 조합의 조사결과를 검정하기 위한 발취조사(연합회) → ⑦ 손해평가회에 자문(연합회) → ⑧ 농림수산성에 자문회의 인정평가 보고(연합회) → ⑨ 농림수산통계등에 의거 심사(농림수산성) → ⑩ 손해액의 승인(농림수산성) → ⑪ 승인손해액을 조합에 통지하고 평가회에 보고(연합회)

□ 스페인

1) 손해평가주관기관

- 경제부 소속기관인 CCS(Consortio Compensacion de Seguro, 보상보험 협회)와 민간보험회사가 일정 지분하에 설립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 하는 별도 기구인 Agroseguro에서 주관
 - 재해발생 통지가 있을 경우 Agroseguro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손해평가인을 동원하여 실시하는데 손해평가인은 고유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활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활동함

2) 손해평가인 자격 및 구성·운영

- 농업관련 대학 졸업자, 농업기술 전문가, 전업농가 등이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위촉하며, 신규로 위촉되는 손해평가인은 기존의 손해평가인과 함께 1년동안 현장에서 손해평가 방법을 습득한 후 정식으로 활동
 - 현재 확보하고 있는 손해평가인의 총수는 500명정도 이며 이중 매년 300~3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음

3) 손해평가방법

- 농가가 재해발생을 통지하면 Agroseguro에서 해당지역의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지시
 - 손해평가는 1~2명이 한조로 구성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목측(目測)으로 손해평가를 실시
 - 손해평가 결과를 평가인이 인터넷으로 입력하고 Agroseguro가 인터넷 자료를 기초로 피해율과 보험금을 산정함

5. 개선방안

-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손해액조정제도, 손해평

가인제도, 제재방안 등 여러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키로 함

가. 단기적 방안

1) 손해평가결과 검증제도 보완

□ 제도보완 배경

- 현행 손해평가요령 제 10조(손해평가결과 검증)에서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1차 손해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예를 들면 시·군·구단위)을 기준으로 피해율 및 보험금지급율을 일정지역내 일정 수의 샘플조사로 2차평가에 의한 손해평가 검증제도 실시
 - 샘플조사에 의해 손해평가가 재조정된 농가의 반발, 농협중앙회의 인력 한계등 1차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1차 손해평가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실행 가능방안과 손해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도입방안

1) 손해평가인 수당의 현실화

- 손해평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함
-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당의 차등화
 - 예> 1년차 5만원, 2년차 6만원, 3년차 7만원(출장비 별도)
- 반장수당의 신설 : 1일 5천원

2) 손해평가 인력구조의 개선

① 선임평가인제도의 운영

- 손해평가인 중에서 정확한 손해평가를 리드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직접 관리함

- 활동수당을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여 손해평가인과 차별화
- 선발인원 : 90명(도별 10명)

② 보조평가인제도의 운영

- 대학생, 퇴직 농협직원, 퇴직공무원 등을 보조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인 조달이 어려운 경우와 공정평가가 의심되는 경우 활용
- 수당 : 손해평가인과 동일

3) 손해평가 조직의 운영

○ 군단위 손해평가 전담기관에서 손해평가 실시

- 현재 계약을 인수한 조합에서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단위의 손해평가 전담기관에서 손해평가 실시
- 군소재지 조합 또는 시군지부가 수행하며 상피제도를 도입
- 필요시 군단위 농업인 단체(전농, 한농, 작목반, 영농법인 등), 공적기관(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세타 등) 활용
- 손해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비 지급

○ 중앙본부 현지조사 전담조직 구성

- 중앙본부의 손해평가 기능 강화로 일선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
- 심사팀 내에 현지조사반을 설치하고 5~10명의 반원배치
- 반원은 임시직 또는 용역직으로 채용하고 일정액의 기본급과 출장성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 계약인수 상황 점검, 기준착과수 및 손해평가 결과 검증

나. 중·장기적 방안

- 손해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운영상 법률적 문제, 행정적 문제(민원), 실행성 및 비용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실행가능하지 않음

검토사항	시행시기	시행상 문제점
- 손해액조정제도	미정	· 민원다발에 따른 법적근거 없음
- 손해평가인제도	미정	· 비용상의 문제
- 제재방안 등	미정	-

(1) 일괄감액 조정제도 마련

□ 도입배경

- 농작물재해 특성에 따른 농업인 평가제도 유지의 불가피성은 인식하나 농업인 평가제도의 한계 및 정성적 평가에 따른 손해액의 거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함
 - 보험가입자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함
- 현행 1차 손해평가와 및 2차 검증결과를 기준으로 특정 가입자의 손해율이 높으면 지역전체 가입자의 손해액을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손해액 일괄조정제도를 도입

□ 도입방안

1) 일괄감액 조정제도의 법률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

- 손해사정기관의 조정결과에 대한 민원다발 등 법률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감액 조정제도의 근거는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반영되어야 함
 - 향후 농작물재해보험 개정법률안에 조문을 보완하여 공정한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표 4-2.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손해액 조정제도를 신설(안)

제8조의2(보험금의 결정)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제8조에 의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산출된 손해평가액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전에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별로 손해평가액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2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조사에서 행정구역단위별 적정성 검증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행정구역별 손해평가조정율을 적용하여 손해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조사 및 손해평가액 검증의 방법, 표본조사원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일본의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험금 삭감제도(제4조)

국가가 부담하는 재보험금의 총액이 국회가 의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검증조사의 주체

- 검증조사의 주체는 농협, 정부, 민간의 역할 및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되 정부·농협·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함

3) 세부적 시행안과 절차의 고시

- 일괄조정 적용단위(시군별 단위, 작목단위 등) 표본농가의 선정, 검증조사방법, 일괄조정방법, 조정안 결정단위 등 세부적인 시행안과 절차는 고시에 규정함

4) 일괄감액 조정제도의 적용기준

- 손해액 일괄조정은 농업인 평가와 검증조사의 편차가 일정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정관련 분쟁을 최소화 시킴

(2) 손해평가인의 교육 및 자격제도 도입

□ 도입배경

- 현재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여건상 현지 농업인의 손해평가 활용은 불가피하며

- 이런 부분을 내포한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임평가인 및 보조평가인제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장확대를 고려할 때, 전문손해평가인력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운영 및 교육 방안이 필요함

□ 도입방안

1) 자격제도의 도입

- o 손해평가인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제고 및 중장기적으로 손해평가인력의 확충을 목적으로 손해평가인 교육 및 자격제도를 도입
- 제도도입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에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손해평가인의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

표 4.3. 손해평가인의 자격기준 및 제도운영(안)

- ① 손해평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 ※ 별표1
-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
 - 보험업법 제186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
 -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농림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할 손해평가인을 정하여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자격제도의 운영기관

- 농작물재해보험 감독주체가 자격제도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거나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할 필요

3) 교육제도와 병행

- 자격시험의 실시 및 등록제도의 도입 등과 이를 위한 교육제도 마련

(3) 손해평가와 관련한 불공정·불성실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

□ 도입배경

-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도덕적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평가인의 온정적 평가로 인한 부실평가에 대해 최소한의 제재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손해평가인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은 충분히 하되 책임사항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도입방안

1) 보험계약자에 대한 제재

- 사업방법서에서 손해율이 연속적으로 불량한 계약자의 보험가입조건 제한(자기부담 30%) 및 가입 거부를 규정

2) 손해평가인에 대한 제재

- 농림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의한 해촉, 위촉의 제한 등의 제재
- * 미국의 경우 FCIC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재보험참여제한, 보조금지원 제한 등의 제제조치를 취함

(4) 기타검토

□ 집단보험(group insurance)상품* 도입

-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집단보험이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산악지형의 특성으로 태풍, 돌풍, 호우, 서리 등의 자연재해가 동일 지역내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손해자료에서도 동일지역내 동일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의 분포가 0%~100%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집단보험은 우리나라 실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 집단보험(group insurance)상품

- 일정범위의 지역에 속하는 농작물에 대하여 단일보험계약으로 체결하고 손해보상도 단일보험계약의 보상으로 하는 것으로
-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일정수준의 피해율을 기준으로 손해보상여부를 결정하는 보험상품
- 예들 들면, 거창군 전체의 피해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상을 하고 전체보상금액도 보험금액×(실제손해율-30%)로 결정하는 상품으로 개별농가에 대한 보상방법은 지역자체에서 결정하거나 개별손해율 평가에 따라 총보상액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운영

□ Data분석 시스템의 구축

- 1차 손해평가반의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 도덕적 해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별 백여개의 증권을 선택하여 표본검사(sample test) 실시
 -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추적함
- * 미국의 경우 RMA직원이 민영보험사의 손해사정결과에 대하여 농가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심사함
 - 카운티당 100여개의 증권을 선택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추적함

여 백

V. 농작물재해보험의 상품 개선방안

1. 품목확대 방안

가. 현황 및 계획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의 6개 품목임
 - 2001, 2002년도에 사과, 배 2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 본사업 실시
 -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품목에 대해서는 2002, 2003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도에 본사업을 실시하였음
- 전업화수준, 재해발생위험정도,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 중·장기적으로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30여개 이상으로 품목확대

나. 개선필요성

1) 품목확대 기준 및 요건 불비

- 피해통계 축적 및 전업농화 등이 미비하고 손해평가방법 정립, 농가호응도, 위험분산가능 등 보험성립요건이 미성숙함
 - 품목확대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가입량이 일정률에 미달할 경우 보험화에 따른 효율성 감소
 - * 감귤품목은 현재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2개 시군에서 사업시행

2) 보험요구화에 대한 민원쇄도

- 보험도입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품목(밤, 뽕은감)등에 대해서도 보험요구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

다. T/F 논의내용

- 품목확대의 현황 및 문제점, 품목확대 선정기준에 대한 외국사례검토, 향후 품목확대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농업정책과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고려하여 추진

라. 품목확대 기준 및 요건

1) 품목확대시 고려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실시를 위해서는 보험확대 적용이 가능한 작목을 선별하여 파급효과, 시급성 및 실시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① 정책적 파급효과
 -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보험이므로 정책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작목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적합성
 -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업수입의 감소를 일정수준까지 보전하는 것이 목적임
 - 농업수입이 가격변동보다는 생산량 변동에 의해 변동하는 작목일수록 보험효과가 큼
 - ③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의 용이성
 - 자료의 세분화 정도, 정확성 등 생산량통계 및 피해통계 등 관련 통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전업농의 비중이 높을 수록 경작규모가 큰 농가가 많을 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는 큼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야 함
 -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적극 관여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의 재정 부담 측면도 고려해야 함
 - ④ 농가간 형평성
 - 보험실시 대상작목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면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2) 품목확대 선정기준

-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액, 호당 생산액, 재배집중도, 경지규모별 농가분포(전업농비율, 상품화비율)등의 기준 선정
 - 보험구매력을 갖춘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대상 농지가 많이 포함될수록 정책적 파급효과가 크며 위험분산 효과도 커짐
 - 생산액이 크면서 호당 평균생산액이 큰 작목일수록 품목확대가능성이 큼
 - 보험대상지역이 넓을수록 위험분산 효과는 커지나 농가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 동일한 작목이라도 영농규모가 크고 해당작목에 상업화율 또는 전업화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가 큼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의 기술적 선정기준
 - ① 보험경영측면에서 위험분산과 수요창출의 가능성 여부
 - 자연재해위험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작물이 일정지역에 한정될 경우 지역적인 위험분산이 어렵고 손해의 변동폭이 커서 보험경영의 일반원칙인 위험결합과 분산을 어렵게 함
 - ② 보험요율측면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량의 집적여부
 - 다수의 통계량이 확보되어야만 장래에 발생할 손실의 빈도 및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정확한 신뢰성 있는 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
 - 따라서 통계량이 부족한 대상작물에 대해서는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된 후에 대상작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③ 손해사정의 현실성 및 용이성
 - 보험상품이 판매된후 실제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조사 및 손해액 평가업무의 전문성, 필요인력의 확보, 손해액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평가, 평가기준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표 5-1. 대상작물의 기술적 선정기준

보험경영의 가능여부	위험분산, 보험수요창출
요율산출의 가능여부	관련통계자료의 충분성
손해사정의 용이성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

마. 외국의 사례

□ 미국

1) 제도운영

- 미국은 본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RMA(Risk Management Agency)에서 시범사업프로그램(pilot program)을 개발하고 운영함
 - 대상작물의 보험화 가능성, 시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사업실시

2) 품목확대요건

- 카운티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타당한 자료(과거 5개년 통계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표 5-2. 미국 농작물보험의 품목확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 10%이상의 참여수준(최소 10%수준의 참여율)전제 ○ 농작물보험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농작물의 재배면적비율 · 농작물사업의 지역별 가치 · 전체 농작물중 대상농작물의 가치평가 · 농작물보험 프로그램이 농가수입에 기여하는 비율 · 향후 5개년간 대상농작물 사업의 경제적 가치 · 재배면적, 생산량 등 통계자료의 확보가능성 ※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하나라도 충족되면 우

선순위가 주어짐

-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가치가 3천만불을 초과하거나
- 각 주별 사업가치가 9백만불을 초과하거나
- RSO(Regional Service Office)의 서비스지역에서 사업가치가 15백만불 초과하거나
-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보고지역에서 사업가치가 3백만불을 초과할 경우

- 시범사업실시를 위하여 위험특성에 대한 분석, 손실평가, 손해방지방법, 시범사업실시에 따른 영향,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 및 충분성에 대한 분석, 대상작물의 시장성 등에 관해 추가적 분석을 실시함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본사업으로의 추진여부를 결정

바. 개선방안

- 시장원리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정착에 따라 현행 6개의 대상 품목에서 여타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다만, 수도작은 시범사업을 거쳐 체계적으로 도입준비
 - 또한 품목확대는 농업정책차원과 제도의 안정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품목확대기준을 사전에 정립하여야 할 것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확대시 품목확대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표 5-3.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기준

- 농가수(참여수준 10% 이상)
- 농작물보험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평가
 - 대상농작물의 재배면적비율
 - 생산액

- 재배집중도
- 경지규모별 농가분포(전업농비율, 상품화율)
- 재배면적, 생산량 등 통계자료의 확보가능성 등

2. 보험상품성 제고

가. 현황

□ 대상재해

- 주계약으로 태풍/우박을 담보하고 특약으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집중호우 수채보상
 - * 집중호우, 태풍·집중호우 수채보상특약은 사과, 배에 한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
- 대상재해의 정의
 - 태풍
 -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시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풍속이 14m/sec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20m/sec이상의 폭풍우를 포함
 - 기상청 태풍발표자료에 의해 판정되며 폭풍우는 피해과수원 최인근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에 나타난 측정자료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에 의해 판정
 - 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함
 - 피해발생 통지시 현장확인
 - 우박
 - 적란운과 봉우리적인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생긴 피해
 - 피해발생 통지시 현장확인

- 집중호우

- 24시간이내 누적 강우량이 150mm이상일때 생기는 집중호우 피해
- 피해과수원 최인근 3개소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에 나타난 측정자료에 의해 판정

□ 담보별(주계약/특약) 가입실태

- 2002~2004년도 현재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의 주계약(태풍, 우박) 및 특약(동상해특약 등)실적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5-4. 담보별 가입실태

(단위 : 백만원, %)

연도	품목	순보험료			보험금		
		주계약	특약	비중	주계약	특약	비중
2004	사과	7,869	1,437	28.90%	3,840	7,278	80.81%
	배	19,113	327	60.38%	1,549	246	13.05%
	복숭아	584	51	1.97%	130	186	2.30%
	포도	563	50	1.90%	312	201	3.73%
	단감	1,598	605	6.84%	-	15	0.11%
	감귤	0	-	0.00%	-	-	0.00%
	계	29,728	2,470	100.00%	5,831	7,927	100.00%
2003	사과	3,886	670	25.82%	15,292	931	32.57%
	배	11,691	281	67.85%	26,769	28	53.79%
	복숭아	302	8	1.75%	407	3	0.82%
	포도	218	24	1.37%	1,978	13	4.00%
	단감	341	222	3.19%	4,374	19	8.82%
	감귤	4	0	0.02%	-	-	0.00%
	계	16,442	1,204	100.00%	48,820	994	100.00%
2002	사과	1,904	272	27.18%	6,954	1,702	24.89%
	배	4,332	148	55.96%	21,803	1,041	65.68%
	복숭아	400	2	5.03%	501	8	1.46%
	포도	310	14	4.05%	1,115	89	3.46%
	단감	252	60	3.90%	287	1,201	4.28%
	감귤	308	3	3.89%	73	7	0.23%
	계	7,505	501	100.00%	30,732	4,048	100.00%

주) 2001년도는 특약담보가 없음

□ 동상해 지역별 실적

표 5-5. 품목별 · 지역별 동상해 실적

(단위:천원,건)

시도	구분	품목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서울	보험료	6,207	77,983	8,722	1,462			94,373
	보험금	23,491	7,670	-	56,881			88,043
	가입건수	28	118	66	13			225
강원	보험료	3,405	19,975	27,476	2,909			53,765
	보험금	2,500	44,004	23,700	42,012			112,216
	가입건수	21	44	131	52			248
충남	보험료	916	4,353	90	357	145	-	5,860
	보험금	-	292	-	1,500	-	-	1,792
	가입건수	3	12	3	6	1		25
충북	보험료	9,477	19,925	3,932	1,718	-	-	35,052
	보험금	4,010	61,928	1,500	-	-	-	67,438
	가입건수	62	31	42	46			181
경남	보험료	79,401	35,999	55	105	550,423	-	665,983
	보험금	101,386	5,789	-	4,400	-	-	111,575
	가입건수	146	128	2	5	1,442		1,723
경북	보험료	1,302,054	128,090	10,126	43,119	21,947	-	1,505,337
	보험금	7,140,516	112,882	161,197	96,389	3,500	-	7,514,483
	가입건수	1,887	206	123	611	173		3,000
전남	보험료	1,521	19,078	108	329	32,109	-	53,144
	보험금	4,200	13,663	-	-	11,425	-	29,288
	가입건수	2	35	3	13	285		338
전북	보험료	429	3,394	130	20	-	-	3,973
	보험금							
	가입건수	2	2	1	2			7
제주	보험료							
	보험금							
	가입건수							
전체	보험료	1,403,409	308,798	50,638	50,019	604,623	-	2,417,488
전체	보험금	7,276,103	246,227	186,397	201,181	14,925	-	7,924,833
전체	가입건수	2,151	576	371	748	1,901		5,747

나. 개선필요성

- 동상해 폐지, 태풍기준의 강화 등 대상재해 축소를 통한 손해를 실적개

선이 필요하다는 보험사업자의 요구가 있었음

- 주계약 및 동상해담보 등 대상재해의 구분으로 손해평가지 손해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도덕적 위험의 증가로 손해를 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연도별 동상해 특약의 보험금 비중은

- 사과의 경우 24.9%(2002년)→32.6%(2003년)→80.8%(2004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효율현실화 필요
- 배의 경우에도 65.7%→53.8%→13.1% 등으로 상당히 높은 편임

다. T/F 논의내용

○ 대상재해의 피해양상, 담보위험의 구분폐지에 대한 논의

- 보험의 유용성과 농민의 가입실태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라. 외국의 사례

□ 미국

- 미국은 과수, 채소, 양어 등 80개 이상의 농작물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 등 3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pilo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농작물보험의 대상재해
 - 자연재해, 가뭄, 과수분, 동해, 우박, 작물폐사, 폭풍, 홍수, 곤충, 수익손실
- 미국 농작물보험의 손해유형(1981~2000)을 보면 가뭄으로 인한 손해가 36%로 가장 많으며 수분과다, 우박의 순으로 나타남

표 5-6. 미국 농작물보험의 손해유형

손해유형	가뭄	수분과다	우박	작물 폐사	동해	기타
비율	36%	24%	8%	4%	7%	21%

주) 출처: AACI(American Association of crop insurers, 2003)

o 미국의 농작물보험 계획(Plans of Insurance)

- 농가는 다양한 형태의 농작물 보험증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관리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임
- 농작물보험 상품이 전체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후 선별된 주와 카운티에서만 유효함
- 대부분의 농작물에 Multiple Peril Crop Insurance(MPCI)가 사용되고 있음

표 5-7. 미국의 농작물보험(plans of insurance)

농작물보험 상품	담보내용
MPCI(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 가뭄,우박,폭풍,서리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인한 손해담보
GRP(Group risk protection)	· 카운티당 평균생산량이 농가의 선택한 생산량 이하일때 담보
CAT(Catastrophic Risk Protection)	· 50%를 초과하는 농작물 손해에 대해서 상품가격의 55%를 보상함
IP(Income Protection)	· 가격하락 및 수확량 감소로 인한 총수입 담보
GRIP(Group Risk Income Plan)	· 농작물의 카운티당 평균수입이 농가가 선택한 수입에 못 미칠때 담보
RA(Revenue Assurance)	· 농가가 목표로 하는 수입담보
AGR(Adjusted Gross Revenue)	· 자연재해 및 시장변동에 의한 전체농가의 수입담보
CRC(Crop Revenue Coverage)	· 농작물의 기대가격이 수확기의 일정가격이하로 떨어질때의 수익담보

마. 개선방안

- 2004년도 기준 품목별·지역별 동상해 실적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동상해보험료가 전체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불과하나, (동상해보험료 : 2,417(백만원), 전체보험료 : 32,197(백만원))
 - 보험금 비중은 57.6%로 높게 나타나(동상해보험금 : 7,924(백만원), 전체보험금 : 13,758(백만원)) 계속 담보시 효율현실화가 필요

- 동상해 담보에 대해서는 봄동상해 판정기준(약관조항 마련)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거나 동 담보에 대한 폐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 보험의 유용성과 농민의 기대 등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할 필요가 있음

- 태풍주의보 기준으로 사고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도한 손해평가비용 등 손해를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태풍풍속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3. 계약인수방법 개선

가.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방식

- 해당작목을 3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단,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 임의보험으로 가입하며 특약가입은 회원농협의 현지확인 및 지역본부인수 승인 필요

2) 보험가입단위

- 2003년이후 과수원 단위로 인수하고 있음

- 2001년도 농가단위, 2002년도 필지단위로 인수

나. 개선필요성

- 현행 가입대상은 해당작물 300평 이상의 재배면적(보험가입금액 100만원이상)이나 소규모농가의 보험가입에 다른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2003년 이후 과수원 단위로 인수하고 있어 역선택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다. T/F 논의내용

- 소규모 농가가입 등에 대한 계약인수방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입요건 상향이 필요하나
- 다만, 동건은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험실적 통계에 의한 가입면적 및 면적당 가입금액 분포와 면적당 보험료 규모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최종결정은 농림부의 판단에 따름

라. 개선방안

- 정책판단요소가 강한 부분으로 인수제한기준의 변경은 정부가 결정함이 타당
- 따라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계약분포자료를 제시키로 함
- 면적기준의 계약분포를 보면,
- 2000㎡이하의 비중이 건수기준은 12.0%이나 금액기준은 3.5% 로 미약한 편임
- 보험가입금액기준의 계약분포를 보면,
- 300만원이하의 건수비중이 5.2%로 낮고, 해당보험료도 2억원 정도임

표 5-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별 계약 및 손해비중(2004년 기준)

가입면적 (m ²)	계약 건수	가입금액 (만원)	계약비중		보험료 (천원)	보험금 (천원)
			건수기준	금액기준		
1,000~2,000	2,978	1,479,477	12.0%	3.2%	1,138,616	228,728
2,000~3,000	3,277	2,518,515	13.2%	5.4%	1,849,388	538,432
3,000~5,000	6,317	7,373,442	25.4%	15.7%	5,251,626	1,772,178
5,000~10,000	7,557	15,277,561	30.4%	32.6%	10,426,261	4,742,133
10,000~50,000	4,686	19,567,135	18.8%	41.7%	13,190,970	6,313,425
50,000 이상	51	661,774	0.2%	1.4%	340,295	163,161
계	24,866	46,877,904	100.0%	100.0%	32,197,156	13,758,058

주) 2004년 11월 기준의 가마감 수치임.

표 5-9.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별 계약 및 손해비중(2004년 기준)

가입금액 (만원)	계약 건수	건수 비중	보험료 (원)	건당보험료 (원)	보험금 (원)
100이하	154	0.6%	44,924,740	291,719	42,122,130
100~200	431	1.7%	85,229,980	197,749	164,193,261
200~300	725	2.9%	162,616,040	224,298	146,705,957
300~500	2,022	8.1%	678,157,420	335,389	611,898,629
500~1,000	6,292	25.3%	3,620,516,860	575,416	2,140,918,987
1,000~3,000	11,348	45.6%	14,436,807,780	1,272,190	6,987,743,513
3,000~5,000	2,585	10.4%	6,846,671,700	2,648,616	2,330,858,979
5,000~10,000	1,229	4.9%	5,587,890,600	4,546,697	1,191,788,680
10,000초과	80	0.3%	734,340,640	9,179,258	141,828,023
계	24,866	100%	32,197,155,760	1,294,827	13,758,058,159

4. “감귤” 보험 대상품목화 지속 여부

가. 현황

- 현재 농가소득이 높은 과수 6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사업을 시행중에 있음(대상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 감귤은 '02년 대상품목에 지정되어 제주도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함

- 04년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 보험가입년수가 경과될수록 감귤의 보험가입 농가가 감소추세

나. 감귤의 특성 및 검토결과

- 감귤은 그 특성상 열매가 가지에 단단히 고착되어 태풍에 의한 낙과피해가 전무함
 -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에도 피해가 거의 없음
- 오렌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매년 과잉 생산이 지속되고 있어 재배농가에서는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음
- 매년 보험가입률이 감소하여 ‘04년에는 3농가가 가입되었으며 올해에는 가입이 없을 것으로 예측
 - 감귤 보험가입 농가 : (‘02) 3,474농가 → (‘03) 57 → (‘04) 3
 - 감귤의 보험가입면적 : (‘02) 2,364ha → (‘03) 29 → (‘04) 1
- ‘04년 ha당 평균 운영비가 723(천원)이 소요되나 감귤의 1ha당 순보험료는 95(천원)에 불과하여 사업개시 즉시 운영손실이 발생
 - 현재 재해보험사업자인 농협에서도 재해에 상관없이 운영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품목에서 제외를 요구하고 있음
 - 금년부터 재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삼성, LG, 현대 등 민영보험사들도 실효성 없는 품목의 대상품목 제외를 요구하고 있음
- 감귤의 보험대상 면적은 19,148ha로 크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저조해 전체평균 가입률을 크게 낮추는 등 정책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다. 향후계획

- 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여부 결정이 필요

VI.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1. 정부의 순보험료 지원을 차등화방안

가. 현황

- 농가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
 - '01년도 순보험료 지원을 : 30%
 - '02년도 이후 순보험료 지원을 : 50%

표 6-1. 정부의 순보험료 지원을 및 농가 부담율

년 도	2001	2002	2003	2004
정부지원율	30%(농협20%)	50%	50%	50%
농가부담율	50%	50%	50%	50%

나. 개선필요성

- 순보험료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담보수준이 높은 계약자와 담보수준이 낮은 계약자를 비교할 때 도덕적 위험은 담보수준이 높은 계약자가 높은 반면,
 - 낮은 담보수준의 계약자가 높은 위험관리인식을 가짐에도 동일한 지원비율이 적용되어 계약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됨

다. T/F 논의내용

- 지원비율을 차등화하여 손해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됨
- 외국사례와 계약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구보고서에서 최종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라. 외국사례

□ 미국

- 미국은 농작물보험의 담보수준이 클수록 정부의 순보험료 보조비율은 축소됨

표 6-2. 미국 농작물보험의 순보험료 보조율 현황

담보수준	CAT.	50/100	55/100	60/100	65/100	70/100	75/100	80/100	85/100	90/100
구보조율	100%	55%	46%	38%	42%	32%	24%	17%	13%	13%
신보조율(1)	100%	67%	64%	64%	59%	59%	55%	48%	38%	na
신보조율(2)	100%	na	na	na	na	64%	64%	59%	59%	55%

- 주) 1. 신보조율은 2001연도부터 적용됨.
 2. 수확량기준 담보상품에 신보조율(1)이 적용되고 수익기준 담보상품에는 수확량기준 담보상품의 보험료 비중에 대해서만 적용됨.
 3. 가격선택비율이 100%이하일 때는 보조율이 달라질 수 있음.
 4. 신보조율(2)는 단체기준담보 상품(GRP/GRIP)에 적용됨.
 5. CAT.담보는 1995-1998년동안 50/60이었으나, 1999년부터 50/55으로 변경됨 (즉, 수확량담보 50%에 가격담보 55%로 축소되었음).

마. 개선방안

<제 1 안 :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지원 >

- 계약자위험관리의식을 제고하는 상품운용이 가능하고 계약자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음

자기부담금	지원율
10%	40%
20%	50%
30%	60%

* 미국의 담보수준 80%에 해당하는 순보험료보조비율은 48%임

< 제 2 안 : 효율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 농민부담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될 수 있으나, 고위험지역의 효율인상에 의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효율수준	지원율
~ 5%	40%
5% ~ 10%	50%
10% ~	60%

- 정책방향이 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제 1 안>을 활용할 수 있음

2. 운영경비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가. 현황

- 농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운영비의 지원을 확대해 왔음
 - 2004년도 운영비 지원은 정부 100%(농협에서 10%부담)
-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표 6-3. 정부의 운영비 지원율

년도	'01	'02	'03	'04
정부지원율	50%	70%	80%	100%
농가부담율	50%	30%	20%	0%
운영비	27억	65억	104억	127억
정부지원액	12억	45억	76억	94억
순보험료	34억	80억	172억	320억
순보험료대비 정부지원율	35.3%	56.3%	44.1%	29.3%

* 출처 : 농협중앙회

- 운영비 지원형태
 - 2001년 제도시행 당시에는 비율방식으로 사업경비를 지원했으나(예정사업 비율의 45%) 지원금액의 증가로 현재는 정액방식으로 실비정산하고 있음

나. 개선필요성

- 외국의 사례 및 일반적인 정책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경비의 전액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지원방식은 일반적인 보험원리에 따라 비율방식의 운영경비 지원이 합리적이므로 보험사의 현행 지원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 현행 실비정산방식은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보험사의 효율성 개선노력을 기대(비차익의 소지가 없음)할 수 없음

다. T/F 논의내용

- 정책보험의 운영경비 전액지원은 당연함
- 지원방식에 있어서 비율지원방식은 T/F 실무회의에서 동의
 - 다만, 계약량에 비례하는 정도가 낮은 경비(손해사정경비 등)에 대해서는 비율방식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라. 외국사례

□ 미국

- 운영경비 지원수준
 - 미국은 운영경비 100% 전액지원하여 농가부담 완화
- 운영경비 지원방법
 - 미국 농작물보험의 사업비율(손해사정비 별도)는 상품별·담보수준별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개인계약의 80% 담보수준의 사업비율은 23.1%임
 - 손해사정비는 순보험료의 7.5%임
 - 총사업비율은 약 30.6%로 추정되며, 매년 적정수준을 검증하여 조정하고 있음
- 운영비의 지원항목은 대리점수수료, 농민지원, 손해사정비 등

표 6-4. 미국 농작물보험 사업비율 현황(2005년 기준)

구분	담보수준		
	75%	80%	85%
개인계약	24.4%	23.1%	22.8%
단체계약	22.6%	21.4%	21.1%
소득담보계약	21.0%	19.9%	19.6%

□ 일본

- 운영경비 지원수준
 - 일본은 운영경비 100% 전액지원하고 있음
- 운영경비 지원방법
 - 일본의 경우 2002년 실적기준 농업공제의 총사업비 535억엔과 순보험료 1,400억엔으로 사업비율은 38.2%로 추정됨

마. 국내 손해보험의 사업비율

- 농작물재해보험 시행당시 예정사업비율은 45%로 가정
- 민영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개인성보험의 경우 사업비율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종목과 의무보험의 사업비율은 낮은 경향이 있음

표 6-5. 손해보험의 종목별 예정율 현황*

(단위 : %)

보험종목별	세분종목별		부가보험료 비중			순보험료비중
			사업비	이익율	소계	
화재보험	주택		55	5	50	50
	일반		45	5	50	50
	공장		35	5	40	60
해상보험	적하		35	5	40	60
	선박		20	5	25	75
자동차보험	책임 I	영업용	10	-	10	90
		자가용	25	-	25	75
	책임 II	영업용	13	2	15	85
		자가용	28	2	30	70
배상책임보험			35	5	40	60

* 보험요율자유화이전의 예정율임. 현재는 보험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민영손해보험에서 사업비 구성요소는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되며,
 - 그 중 손해조사비는 대량의 사고건에 대하여 철저한 손해조사가 필요한 자동차보험은 17.4%의 비중임
 - 상대적으로 사고빈도가 낮고 대형 기업물건위주인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은 8%~9%대임

표 6-6. 손해보험의 실적사업비 구성비 현황(2003년)

(단위 : 억원)

구 분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계
화재보험	1,106 (78.5%)	130 (9.3%)	172 (12.2%)	1,408 (100.0%)
해상보험	738 (62.9%)	97 (8.2%)	338 (28.8%)	1,172 (100.0%)
자동차보험	14,611 (62.8%)	4,035 (17.4%)	4,603 (19.8%)	23,249 (100.0%)
배상책임보험	724 (63.8%)	166 (14.6%)	244 (21.5%)	1,134 (100.0%)

표 6-7. 일반 손해보험의 사업비 구성항목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모집비,신계약비 및 수금비,대리점수수료,공동보험수수료,지급대리업무수수료,수재보험수수료,수재이익수수료,출재예수금이자,출재이익수수료,수재예탁금이자,수입대리업무수수료,영업잡이익,영업잡손실	보험사고예방비,지급손해조사비,수입손해조사비	세금과공과,도서신문비,감가상각비,수선비,보험료,수수료,협회비,체육진흥비,대손상각비

- 농협의 순보험료대비 사업비율 실적은 2001년 71.5%, 2002년 75.2%, 2003년 53.6%, 2004년 39.4%로 감소되어 왔음
-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손해사정비의 비중은 12.1%임(2004년)

표 6-8. 농작물재해보험 실제운영경비 내역(농협)

(단위 : 백만원)

연도	순보험료	지급경비		보험경비		공통 관리비	경비계
		인건비	경비	조합 수수료	손해 평가비		
2001	3,399	522	482	982	242	202	2,430
2002	8,006	678	777	2,606	907	1,054	6,022
2003	17,202	800	904	5,598	1,076	842	9,220
2004	32,197	958	1,169	5,423	1,538	3,591	12,679

바. 손해사정비의 부과방식

- 손해사정비를 보험료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정률법)과 보험료규모에 관계없이 부과(정액)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준조세 등 매출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비는 정률제를 적용하며 고정비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음
 - * 정액제 사용 : 지급임차료,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조사연구비 등의 일반관리비
 - * 정률제 사용 : 준조세, 신계약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등
- 운영비중 손해사정비용을 정액지원하는 것은 보험료의 거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손해사정비용은 들수 있으나
 - 손해사정을 강화할수 있으며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사. 개선방안

- 외국사례 및 타 정책보험 운영경비의 전액지원을 고려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경비도 전액 지원키로 함

- 보험료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 지원
 - 보험원리에 다른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 및 보험사업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

- 운영비 지원수준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아직 시행초기이고, 상대적으로 손해사정이 복잡하고 도덕적 위험이 많아 철저한 손해사정이 필요한 중목인 점, 정책보험인점 등 감안할 때,
 - 영엽보험료의 30%~40% 수준이 적절하며 순보험료 기준으로는 42.9%~66.7%로 추정됨

- 손해사정비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의 문제라기 보다는 관리방식의 문제이므로 사업비 관리체계를 사업비지출 세분항목별로 관리하고,
 - 매년 사업비지출 실적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조정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사업비의 증가요인으로 민영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기대이익을 25%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

3. 재보험 사업경비 배분

가. 개선필요성

- 민영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재보험사업경비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
 - 사업비요구의 취지는 원보험사업자와의 partnership을 통한 운영비용 (market presentation 등 소요비용)이 필요한바 원보험사업비의 20%정

도의 사업비 요구

나. T/F 논의내용

- 민영보험사는 운영경비의 20% 수준을 요구
- 재보험사업비의 실제 경비지출을 예상하여 적정수준을 정할 필요
- 영업보험료에 포함되는 순사업경비의 세분지출항목인 일반관리비, 영업비, 손해사정비 중 영업비와 손해사정비의 대부분은 원보험자의 몫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 재보험자의 실제경비는 일반관리비의 일정부분과 소폭의 영업비와 손해사정비에 해당하는 α 를 더하는 수준이 적정

다. 외국사례

- 재보험료에는 사업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라. 개선방안

- 재보험사업경비의 인정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보험계약조건의 일부이므로 재보험계약체결시 결정기로 함

여 백

VII. 기타 제도개선방안

1. 농작물재해보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가. 현황

- 농작물재해보험의 책임준비금은 농작물재해보험법제16조에 의한 보험업법 준용으로 민영보험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나누어 적립
 -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
- 비상위험준비금은 매기 보험종목별로 예정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고, 연간 경과보험료의 50%에 달할 때까지 누적적립할 수 있음
 - 적립방법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예정이익율(통상 5%)를 곱한 금액을 매기 적립할 수 있고, 연간 경과보험료의 50%에 달할 때까지 누적 적립할 수 있음(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 적립목적은 보험종목별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입하여 손실보전할 수 있음.
 - 이런 손실보전기능을 고려하여 적립액에 대해서는 해당보험회사의 연간 경과보험료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나. 개선필요성

-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보험업 관련법규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는 대재해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적립한도인 연간 보유보험료의 50%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최대순손해율이 400%를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손실보전기능이 취약
-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의 당기 적립율인 예정이익율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재해발생시 충분한 준비금 적립에는 부족
 - 5%씩 매기 적립할 경우 최대순손해율 400%를 가정할 때 20년* 이 소요됨(예정기초율 50%:45%:5% 가정)
 - * 영업보험료 5%를 20년 적립하면 영업보험료 100%를 적립할 수 있고 순손해율 400%는 영업손해율 200%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영업보험료와 추가적립금 100%로 영업손해율 200%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 그러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매기 적립율을 상향할 필요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한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확대가 필요
 - 실질적인 손실보전기능을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상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이 타당

다. 국내외 사례

□ 국내 보험감독 규정(농작물재해보험도 적용)

- 당기 적립기준율
 - 종전 예정이익율(2%~5%)의 35%~100%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예정이익율이 회사별로 달라 보험종목별 매기적립기준율을 예정이익율에 준하여 정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음
- 누적적립율

- 종전 연간 경과보험료의 50%에서 다른 보험종목은 종전대로 하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경과보험료의 40%로 축소하는 개정안 추진중
- 준비금적립금 환입조건의 강화
 - 종전 손해를 100% 초과시 환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험종목별로 환입가능 손해를 80%~140%로 탄력적으로 적용

□ 미국 농작물보험의 기금운영(SRA sec. II. B. 8.)

- 미국의 경우 FCIC의 펀드에서 관리하므로 참여민영보험회사에 이익배분되지 않는 금액은 준비금적립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나머지는 준비금성격의 펀드잔고로 보유하고 있음
- 이익배분기준은 펀드별·손해율별로 차등배분을 적용(SRA)
 - 손해율 65%~100%일 때 고위험펀드는 15%만 이익배분(85% 적립)하고, 저위험펀드는 94%를 이익배분(6% 적립)
 - 손해율 50%~65%일 때 고위험펀드는 9%만 이익배분(81% 적립)하고, 저위험펀드는 70%를 이익배분(30% 적립)
 - 손해율 50%미만일 때 고위험펀드는 2%만 이익배분(98% 적립)하고, 저위험펀드는 11%를 이익배분(89% 적립)

□ 영국 민영보험회사의 평형준비금관련 규정

- 보험종목별 매기 적립비율 및 적립한도에 따라 적립하고 일정손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입사용이 가능

보험종목	당기 적립율	적립한도	환입가능 손해율
Property Insurance	3%	20%	72.5%
Business Interruption	3%	20%	72.5%
Marine & Aviation	6%	40%	95.0%
Non-Propotional Reinsurance	11%	75%	100.0%
Nuclear Insurance	75%	600%	25.0%

□ 일본 민영보험회사 이상위험준비금관련 규정

- 이상위험준비금은 우리나라의 비상위험준비금에 해당
- 이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은 담보위험별로 수입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한도로 적립
 - 지진보험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이외에 위험준비금으로 정미보유보험료와 자산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성 인정하고 있음

□ 일본 농업공제 준비금관련 규정

- 일본 상호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잉여금의 일부를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조합 등은 부족금 보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성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잉여금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라. 개선방안

- 국가재보험 도입으로 최대손해율이 200%로 제한되므로 추가적립금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손해율 편차는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보험감독 규정 개정시 적정한 매기 적립율과 적립한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대형태풍의 과거주기를 5년으로 볼때 20% 매기적립율과 100%의 적립한도가 적정
- 또한 적립한도 100%에 대한 법인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

※ <참고자료>

1. 책임준비금 손금산입관련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9.12.31>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추진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18조(보험계약준비금) ①~⑤ (생략) ⑥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p> <p><u>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u></p> <p>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로 경과손해율이 100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와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6-18조(보험계약준비금)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은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p> <p>1. -----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 19에서 정한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p> <p><u>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적립기준율</u></p> <p>2. -----로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p> <p>-----</p> <p>-----</p>	<p>비상위험준비금 적립목적 명시</p> <p>적립한도 개선</p> <p>환입조건 변경</p>

<p>3. 제1호의 예정이익률은 기초 서류에서 정한 율을 말한다. 단, 수재보험 및 해외원보험의 예정이익률은 100분의 2를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제1호에서 정한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04. 7. .)</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부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상위험준비금의 보험종목별 배분에 관한 적용례)</p> <p>① 1999년 3월 31일 이전에 보험종목 구분없이 총액으로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은 제6-18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이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보험종목별로 배분한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보험종목에 배분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액이 보험종목별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보험종목별 적립액이 제6-1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에 부족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각 보험종목에 배분한다.</p>	<p>보험종목 별 구분 관리</p> <p>과거규정에 의한 총액적립 액 배분 기준 명 시</p>
--	---	--

(신 설)	<p>[별표 19]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적립한도 및 환입시 적용되는 일정비율 (제6-18조제6항관련)</p> <p>※ 하단 참조</p>
-------	---

[별표 19]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적립한도 및 환입시 적용되는 일정비율(제6-18조제6항관련)

1. 적립기준율

구 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기준율	5%	3%	2%	6%	5%	3%

2. 일정비율

구 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수재 및 해외원보험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	50%	50%	40%	50%	50%	50%
경과위험손해율의 일정비율	120%	110%	110%	140%	110%	80% ^{주)}

주) 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손익이월에 관한 사항

가. 검토배경

- 농작물재해보험의 자연재해 특성상 회계연도별 손익의 변화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 농작물보험사업을 일반기업회계원칙에 따를 경우 사업손익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필요

나. 농협의 의견

- 원보험사업자인 농협은 다음의 이유로 손익이월의 허용을 요청함

농작물재해보험 특성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 자연재해의 불규칙적인 특성으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성격의 손익을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당기순손익으로 시현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을 고려치 못한 결과임

보험사업자의 경영안정화로 보유비율 확대가능

- 거대재해가 발생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거대재해로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당기 손실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업자의 경영이 불안정하게 됨

보험요율 변동 심화 방지

- 손익이월을 함에 따라 급격한 보험요율 인상을 방지

수지상등 원칙에 충실하게 따를수 있음

- 손익이월시 농작물보험의 손익이 누적적으로 관리되므로 장기적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른 운영가능

구분회계원칙에 부합

- 손익을 이월할 수 있으면 다른회계와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자체회계 내에서 손익을 누적관리 할 수 있으므로 구분계리 원칙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음

□ 농협의 목적사업에의 영향이 없음

- 공제사업과 연계처리 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취급은 부당하다는 지적 발생
 -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손익을 공제사업회계로 부담케함으로써 공제사업회계의 손익을 왜곡시켜 공제계약자의 지분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농작물보험의 손익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
- 타사업과 연계시에도 해당업무에 대한 동일사유로 지적이 예상되며 농협의 전체 사업손익과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지도사업재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조합원의 반발을 초래함
- 따라서 손익이월이 가능하면 타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 개선방안

- 농작물재보험의 손익이월 여부는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손익이월은 가능하지 않음
- 다만, 자회사나 전담기구의 설립이 대안적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 전담조직 보강에 관한 사항

가. 개선사항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정책보험으로 민영과 정부가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계약조건의 협상 등이 이루어지는 분야임

- 따라서, 정부조직측면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담조직을 확보함으로써 협력 및 거래상대인 민영보험사와의 동등한 거래위치에서 신속·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o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확대로 사업유지에 필요한 업무가 다양화 되고 급증함에 따라 현재의 인력(공식전담인력 1명)과 조직으로는 역부족
-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본업무는,
 - 예산 및 보험료·경비지원 관리업무
 - 기금관리업무
 - 재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업무
 - 농작물재해보험관련규정 제·개정업무
 - 보험판매자 및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업무
 -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민원업무 등

나. T/F 논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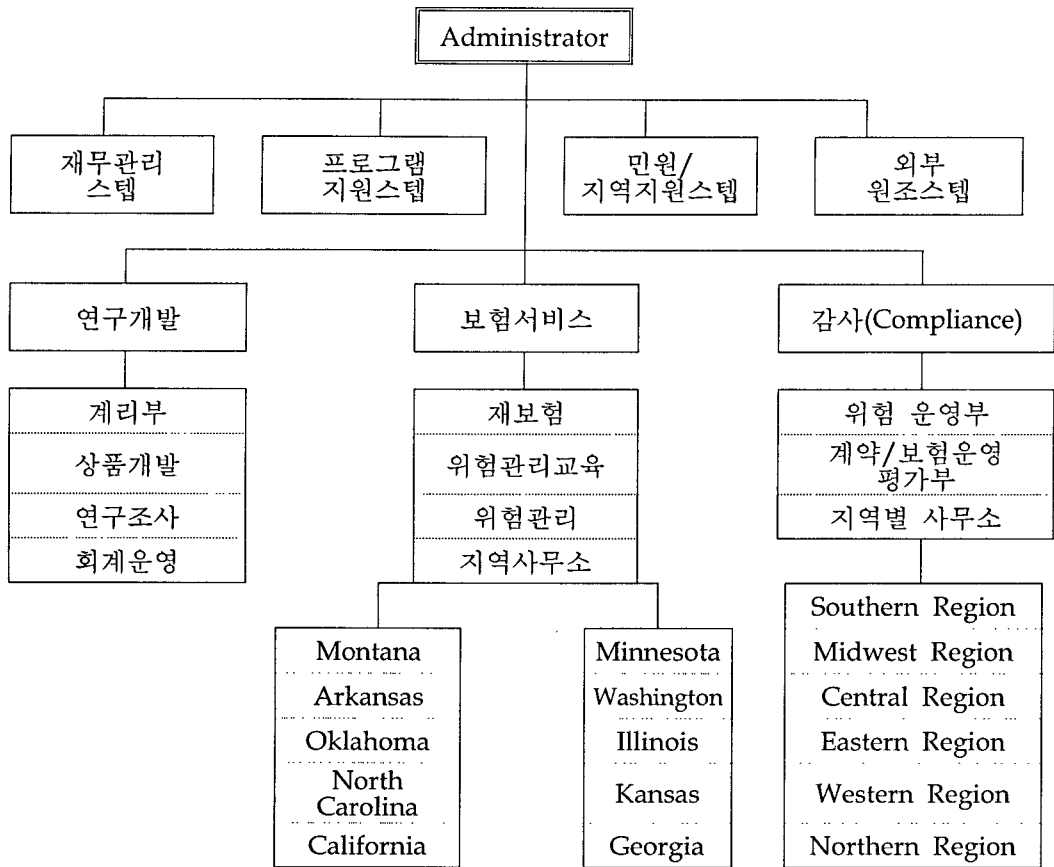
- o T/F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었음

다. 외국사례

□ 미국

- o 농림성 산하에 전담조직인 RMA(risk management agency)에서 관장하면서 실무조직으로는 정부출자의 FCIC(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을 두고 있음
- o RMA(FCIC)는 14개 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맺고 있으며 직원수는 약 530여명으로 약 27,000의 Insurance Agent(보험계약 대리인)와 10,000여명의 손해사정사가 활동 중임
- o RMA의 조직은 3개 실무부서와 4개의 스탭부서를 두고 있음
 - 아래의 “미국 RMA 조직도” 참조

그림 7-1. 미국 RMA의 조직도



-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파트에서는 상품개발을 감독함.
- 보험서비스(Insurance Service) 파트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보험사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와 지방의 보험사업 관리 및 지원이 주 업무임.
- 감사(Compliance)파트에서는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상품판매 및 서비스가 프로그램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함.

□ 일본

- 농림수산성의 2개 과(보험과, 보험감리과)에 40명의 공무원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를 담당
- 농업공제조합(또는 시정촌), 농업공제연합회,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농

림수산성) 3단계로 운영

- 농업공제조합은 읍·면단위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지역은 행정기관(市町村)에서 취급함(농협과는 다른 조직). 공제연합회는 도(都道府縣)단위로 1개씩 설치 (총47개)되었으며 연합회별 손해평가원은 평균 73명임.
- 농림수산성 경영국내에 2개과(보험과, 보험감리과)에서 약 40여명의 인원이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재해보험 총괄 기구임
- 농업공제협회는 연합회의 연락협조를 기하고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함
- 농업공제기금은 연합회 및 조합의 사업부족금 발생시 융자 및 지급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제금의 원활한 지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약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라. 개선방안

□ 농림부내에 (가칭)농업보험과 신설 : 8명 증원

- 농림부내 (가칭)농업보험과를 신설하여 보험업무를 적극적·효율적으로 추진
 - 3개계 신설 : 기획·조사 / 재보험 / 검사·기금
- ⇒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기금신설, 품목확대 등 산적한 현안업무를 적극적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전담과 신설로 사업 활성화 도모

여 백

Ⅷ. 향후과제 및 추진일정(안)

□ 보험요율의 산출 및 신고

- 보험요율 산출 : 2005년 1월 ~ 2005년 2월 중순
- 보험요율 신고 : ~ 2005년 2월말
- 시행 : 2005년 3월 1일

□ 재보험운영방안 결정 및 재보험계약 체결

- 재보험운영방안 결정 : ~ 2005년 1월말
- 재보험계약 체결 : ~ 2005년 2월말
- 시행 : 2005년 3월 1일

□ 제도개선의 세부시행방안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 제도개선을 전제로 사업참여를 결정한 민영보험회사 및 원보험사업주 체인 농협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
 - 주요 제도개선의 세부방안에 대한 협의 및 이해 도모
 - 효율적인 재보험계약업무의 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필요
- 협의체 운영기간 : ~ 2005년 3월 1일

〈부 록〉

농작물재해보험법	107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119

부 록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①이 법에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해보험대상농작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의2. 농작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부장관이 재해보험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농림부의 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상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규모 및 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그 발생의 빈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험사업자) ①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험요율의 산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모집) ①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61조(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모집인으로서 농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손해평가)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농작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회계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 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대상농작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재정지원)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재보험사업) ①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3(기금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의4(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는 재보험료
2. 정부·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14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
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정수관의 업
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
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15조 (보고 등) 농림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
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업법의 적용)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농협중앙회"로 본다.

제17조 (벌칙) ①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 (과태료) ①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농협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여 백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산정에 필요한 피해개황조사, 기준착과수조사, 낙과수조사, 수확기착과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준착과수(基準着果數)”라 함은 상품화를 목적으로 적과(摘果)를 실시한 직후에 과수(果樹)에 달려 있는 과실(果實)의 수(數)를 말한다.
4. “낙과수(落果數)”라 함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의 수를 말한다.
5. “수확기착과수(收穫期着果數)”라 함은 보험대상농작물별로 수확하기 직전에 과수에 달려 있는 과실의 수를 말한다.
6. “조사표본수(調査標本數)”라 함은 기준착과수·낙과수·수확기착과수 조사를 위하여 필지단위(筆地單位)의 모집단(母集團)에서 추출할 표본(標本)의 수(數)를 말한다.
7. “조사표본주(調査標本株)”라 함은 기준착과수·낙과수·수확기착과수 조사를 위해 필지단위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주(標本株)을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임무)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준착과수조사

2.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낙과수조사
3.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조치 등에 대해 현지에서 보험가입자 지도
4. 보험대상농작물의 수확기에 수확기착과수 조사
5.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증표를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의 위촉은 보험가입자 5명 내지 10명당 1명의 비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손해평가인의 해촉)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손해평가업무를 태만히 한 때
4. 이사 등의 사유로 손해평가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손해평가인 실무교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손해평가인에 대해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평가반 구성)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손해평가대상 필지 및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2인이상으로 구성한다.

제8조(손해평가단위) ①손해평가단위는 필지로 한다.

②보험가입자가 여러 필지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준착과수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피해개황조사, 낙과수 및 수확기착과수는 재해 피해를 입은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9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결과를 손해평가표에 정확히 기재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결과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결과 검증)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가입자중에서 일정수의 가입자를 임의추출하여 조사한다.

제11조(조사표본수 결정) ①기준착과수조사·낙과수조사·수확기착과수조사시 조사표본수는 통계이론을 기초로 신뢰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표와 같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평가신뢰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12조(조사표본주 추출방법) ①조사표본주는 필지의 형상, 재식형태, 착과주수(着果株數), 수령(樹齡), 착과정도(着果程度)를 감안하여 추출하여야 한다.

②조사표본주 추출간격(抽出間隔)은 해당 필지에 식재된 착과주수(着果株數)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본수를 나누어 결정한다.

③조사표본주는 착과된 모든 과수(果樹)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출간격을 적용하여 추출한다.

제13조(기준착과수조사) ①기준착과수조사는 전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적과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와 협의하여 그 조사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착과수조사는 조사표본주에 달려 있는 과실의 수(數)를 모두 세는 실측조사를 한다. 다만, 조사표본주에 과실이 고르게 달려 있는 경우에는 수관(樹冠)을 이등분하고 1/2에 대하여 과실수를 실측한 후 그 실측치에 2를 곱하여 조사표본주의 과실수를 산출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사실확인 및 낙과수 조사)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중에 재해피해를 입었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즉시 현지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시에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③낙과수조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출한 조사표본주의 수관면적(樹冠面積)내에 떨어진 과실수를 모두 세는 실측조사에 의한다. 다만, 조사표본주의 수관면적내에 떨어진 과실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수확기착과수조사) ①수확기착과수조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사실을 통지하여 낙과수조사를 실시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초 수확예정일 5일전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수확과실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와 협의하여 조사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확기착과수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확기착과수조사는 조사표본주에 달려 있는 과실수를 모두 세는 실측조사를 한다. 다만, 조사표본주에 과실이 고르게 달려 있는 경우에는 수관을 이등분하고 1/2 에 대하여 과실수를 실측하고 그 실측치에 2를 곱하여 조사표본주의 과실수를 산출할 수 있다.

제16조(손해평가업무방법서)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 백

참고 문헌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 김창수, 「재보험개론」,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0
- 농협, 2003년 농작물 재해보험 실무교육 교재, 2003
- 보험개발원,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률 산출", 2002.1, 2003.2, 2004.2
- 보험개발원, "FY2003 손해보험요율검증보고서", 2004.9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1997.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험개발원, "농작물재해보험 단계별 확대방안", 2004.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명채, 최경환, 정정길), "농작물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 1996.12
- 행정자치부 · 국립방재연구소, "선진외국의 보험제도 운영체제 연구", 2003.11
- AACI&CIRB(American Association of Crop Insurance & Crop Insurance Research Bureau), "Crop Insurance 101", 2003
- Anne E. Kleffner, Neil A. Doherty, "Costly Risk Bearing and the Supply of Catastrophic Insura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96
- Barry K. Goodwin, Vincent H. Smith, "The Economics of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id",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95.8
- C.S. Anantapadmanabhan "Some Statistical Aspect of Catastrophic Risks"
- Dan R. Anderson, "All Risks Rating Within A Catastrophe Insurance System",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76.12
- Daniel F. Gogol, "An Actuarial Approach to Property Catastrophe Cover Rating", CAS Forum, Special Edition, 1993

- David R. Clark, FCAS, "Basics of Reinsurance Pricing", 1996.7
- Dwight M. Jaffee, Thomas Russell, "Catastrophe Insurance, Capital Markets, and Uninsurable Risk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97.6
- CII, "Practice of Reinsurance", 1981
- Element Re, "Weather Risk Management (Market, Products, applications)", 2002
- FCIC,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 3rd Draft, 2004.5
- Guy Carpenter, "The Evolving Market for Catastrophic Event Risk", 1998.8
- International Risk Management, "Practical Applications of Financial Market Tools to Corporate Risk Management". Emap Finance, 1996
- Lewis V. Augustine, "Catastrophe Risk Mitigation: A Survey of Methods", CAS Forum, 1998
- Ross J. Davidson, Jr., "The Future Viability of U.S. Federal Crop Insurance", 2003.9
- Swiss Re, "The Agriculture Risks Unit at Swiss Re", 1998.7
- Swiss Re. "Natural Catastrophes and Reinsurance", 2003.4
- Swiss Re, "Climate Change : Potential impacts on agriculture", 1998
- Swiss Re, "Market Risks : 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1998
- USDA RMA, "New Program Development Handbook", 1997.10
- : <http://www.rma.usda.gov/>
- USDA RMA, "A Risk Management Fact Sheet", 2003.6
- _____, "Interim Prudential Source book for Insurers(IPRU(INS))-General Insurance Business : Equalization Reserves", 2002
- _____, "Munich Re's Review of 1997's Natural Catastrophes", Japan Insurance, 1998.4
- _____, "Federal Crop Insurance and Noninsured Crop Assistance", As Amended Through Public Law 107-136, 2002.1

_____, "Federal Crop Insurance Act 2002

www.agriculture.senate.gov

日本 農水産省, “農業災害 補償制度의 現況”, 平成 13年 11月

_____, “農業災害 補償制度의 概要”, www.moff.go.jp

"日本保險業法施行規則(平成8年2月29日 大藏省令 第5号)" : www.houko.com

"日本農業災害補償法"(改正平成 15・6・18・法律 91号)

"日本農業共濟再保險特別會計法"(改正平成 15・6・18・法律 91号)

"林業共濟特別會計法"(改正平成 12・5・31・法律 99号)

"農業共濟基金法"(改正平成 11・6・11・法律 69号)